www.kpfis.or.kr

재정융자사업 이해하기

Understing Fiscal Loan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www.kpfis.or.kr

재정융자사업 이해하기

Understing Fiscal Loan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재정융자사업 이해하기

김선옥 부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발간 보고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이 향후 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6908-8581 ✉ analysis@kpfis.kr

발간사

2016년 설립된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화 플랫폼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정보의 분석을 통해 재정정책의 수립과 운용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재정융자는 정부가 국민의 복지 향상 또는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금융 활동입니다. 1950년대 재정융자제도가 도입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 수단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자금지원, 신생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국민의 삶의 질과 형평성을 제고시키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재정융자사업 이해하기」는 재정융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융자의 개념과 관리 절차,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융자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재정융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했습니다.

또한, 디브레인의 국가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융자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시계열로 제공함으로써 재정융자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 조건 등 융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담당자와 융자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에게 사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을 통해 재정융자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한국재정정보원은 국민들이 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 재 훈**

C·O·N·T·E·N·T·S

1장 재정융자제도 이해

1. 재정융자제도 ····· 12
   1) 재정융자란? ····· 12
   2) 재정융자의 필요성과 역할 ····· 13
   3) 정부의 금융시장 지원 방식 ····· 14
   4) 재정융자 관리 절차 ····· 19
   5) 재정융자 관리시스템 ····· 23
2. 재정융자제도의 변천 ····· 28
   1) 대충자금특별회계 (1954~1961) ····· 29
   2)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1962~1973) ····· 30
   3) 경제개발특별회계 (1974~1976) ····· 31
   4) 자금관리특별회계 (1977~1987) ····· 31
   5) 재정투융자특별회계 (1988~1996) ····· 32
   6) 재정융자특별회계 (1997~2006) ····· 32
   7) 국가재정법 제정 (2007년 이후) ····· 33
3. 재정융자 효율화 제고 방안 ····· 36
   1) 재정융자사업의 체계적 관리 ····· 36
   2) 재정융자 축소와 민간금융 활용 ····· 38

2장 재정융자 현황

1. 재정융자 규모 ····· 44
   1) 융자지출 ····· 44
   2) 융자원리금 ····· 47
   3) 분야별 융자 집행률 ····· 51
2. 회계·기금별 현황 ····· 54
   1) 특별회계별 융자 ····· 54
   2) 기금별 융자 ····· 55
3. 분야·부문·부처별 현황 ····· 58
   1) 분야별 융자 ····· 58
   2) 주요 분야의 부문별 융자 ····· 64
   3) 부처별 융자 ····· 68

3장 주요 재정융자사업 소개

1. 주택구입·전세자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72
2. 전세임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76
3. 다가구매입임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78
4.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80
5. 가로주택정비사업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82
6. 창업기업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 84
7. 소상공인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 86
8. 신성장기반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 88
9. 재도약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 91
10. 투융자복합금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 95
11. 산지유통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98
12. 맞춤형농지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기금) ····· 100
13.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103
14. 식품외식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106
15. 도매유통활성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111
16.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115
17.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117
18. 인삼특용작물계열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120
19.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122
20.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125

참고 문헌 ····· 128

부록

<부록 표 1> 기금별 융자 규모 추이 (2007~2018) ····· 130
<부록 표 2> 기금별 융자 현황 및 주요 사업 (2019년도 기준) ····· 133
<부록 표 3> 분야별 융자 규모 추이 (2007~2018) ····· 136
<부록 표 4> 부처별 융자 규모 추이 (2007~2018) ····· 138
<부록 표 5> 재정융자사업 목록 (2019년 규모 순) ····· 140

C·O·N·T·E·N·T·S

표 차례

<표 1-1> 기관별 보증종류 및 유형 ····· 17
<표 1-2> 정부의 자금지원 방식 비교 ····· 18
<표 1-3> 개별 특별회계를 통한 융자사업 사례 (1950년대) ····· 30
<표 1-4> 개별 특별회계를 통한 융자사업 사례 (1990년대) ····· 33
<표 2-1> 분야별 융자 집행율 추이 ····· 52
<표 2-2> 특별회계별 융자 현황 및 주요 사업 (2019년도 기준) ····· 55
<표 2-3> 2019년도 주요 기금별 현황 및 주요 사업 (융자 규모 상위 10개 기금) ····· 57
<표 2-4> 분야별 사업수 변화 ····· 60
<표 2-5> 분야별 융자 규모 추이 ····· 61
<표 2-6> 분야-부문별 재정융자사업 현황 (2019년 본예산 기준) ····· 63
<표 2-7>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융자 규모 추이 ····· 65
<표 2-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부문별 융자 규모 추이 ····· 66
<표 2-9> 농림수산 분야의 부문별 융자 규모 추이 ····· 67
<표 2-10> 부처별 융자금 현황 ····· 68

그림 차례

<그림 1-1> 정부의 자금지원 방식 ····· 14
<그림 1-2> 융자와 이차보전 규모 추이 ····· 16
<그림 1-3> 정부 자금 지원 방식에 따른 활용도 비교 ····· 19
<그림 1-4>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과 심의 절차 ····· 20
<그림 1-5> 유형별 재정융자사업 집행 절차 ····· 21
<그림 1-6> 융자사업 집행 사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 22
<그림 1-7> 이차보전 사업 집행 사례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 22
<그림 1-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융자금 관리 흐름도 ····· 24
<그림 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 체계도 ····· 26
<그림 1-10>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사후융자관리 절차 ····· 27
<그림 1-11> 재정융자 관련 회계·기금 변화 ····· 34
<그림 1-12> 보조금 프로세스의 시스템화 ····· 38
<그림 1-13> GDP 대비 대출금 비중 추이 ····· 39
<그림 1-14> 정부 대출금리와 예금은행 대출금리 추이 ····· 40
<그림 2-1> 재정융자 규모 추이 ····· 44
<그림 2-2> 회계·기금별 융자 규모 추이 ····· 45
<그림 2-3> 전년 대비 재정융자 증가율 추이 ····· 46
<그림 2-4> 연도별 융자원금회수 규모 추이 ····· 47
<그림 2-5> 연도별 융자 이자 수입 추이 ····· 48
<그림 2-6> 순융자 추이 ····· 49
<그림 2-7> 통합재정의 순융자 규모 추이 ····· 50
<그림 2-8> 융자 집행률 추이 ····· 51
<그림 2-9> 주요 분야의 부문별 융자 집행률 추이 ····· 53
<그림 2-10> 특별회계별 융자금 추이 ····· 54
<그림 2-11> 주요 기금별 융자금 추이 ····· 56
<그림 2-12> 분야별 융자금 비중 변화 (2007, 2018) ····· 59
<그림 2-13> 재정융자사업 분야별 융자금 현황 (2019년 본예산 기준) ····· 62

재정융자사업 이해하기

Understing Fiscal Loan

1장

재정융자제도 이해

1. 재정융자제도
1) 재정융자란?
2) 재정융자의 필요성과 역할
3) 정부의 금융시장 지원 방식
4) 재정융자 관리 절차
5) 재정융자 관리시스템

2. 재정융자제도의 변천
1) 대충자금특별회계 (1954~1961)
2)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1962-1973)
3) 경제개발특별회계 (1974~1976)
4) 자금관리특별회계 (1977~1987)
5) 재정투융자특별회계 (1988~1996)
6) 재정융자특별회계 (1997~2006)
7) 국가재정법 제정 (2007년 이후)

3. 재정융자 효율화 제고 방안
1) 재정융자사업의 체계적 관리
2) 재정융자 축소와 민간금융 활용

1. 재정융자제도

1) 재정융자란?

■ 사전적으로 융자는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정에서 융자라함은 정부가 국민의 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것

- 재정융자제도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해주는 제도
- 우리나라는 기간산업 육성, 농업구조개선, 중소기업육성, 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자금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민간자금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
- 재정융자는 공공목적을 위해 정부 외의 대상에게 재정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고보조사업, 출연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융자 수혜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차이

* 현행 법령상 재정융자제도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 제2편 제2장에서 융자의 의미, 근거 등을 설명하고 있음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의 융자의 의미>

▶ 자금의 '융자'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

자료: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2) 재정융자의 필요성과 역할

■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 원리에 따라 민간금융시장이 작동할 경우 외부성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민간금융시장이 외부충격 등 어떤 요인에 의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경우 그 영향이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시장까지 영향을 끼쳐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성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 정보로 인하여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완전한 정보를 가진 시장보다 자금거래가 작게 됨
- 담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민간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능력이 취약함

<정부의 역할과 재정융자>

▶ 정부의 역할은 ① 사유재산권의 보호, ② 시장실패의 교정, ③ 가치재의 공급, ④ 소득과 부의 재분배, ⑤ 거시경제의 안정화 등이 있음

▶ 조세정책, 지출정책, 자산 및 부채 관리 등 재정정책은 정부가 정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수단으로 재정융자는 정부의 지출정책 수단으로 사용

■ 정부는 민간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재정융자를 제공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 민간금융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어려운 대상에게 완화된 기준으로 자금을 제공해줌으로써 자금 부족 현상을 완화해줌
- 민간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성장 가능성이 큰 신생 기업에 자금을 융자금을 융통해 주고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개선해주는 역할

-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융자 수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줌

3) 정부의 금융시장 지원 방식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금융시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직접융자 방식, 전대방식, 이차보전, 신용보증 등이 있음**

- 직접융자 방식과 전대방식은 정부가 공공자금을 통하여 조성한 융자금을 융통해주는 재정융자의 형태
- 이차보전과 신용보증 방식은 민간금융시장의 자금을 이용해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간접적인 방식

그림 1-1 정부의 자금지원 방식

자료: 김지영 외(2008),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융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 **직접융자 방식은 소관 부처 또는 사업관리 주체가 융자 수혜자에게 직접 융자해주는 방식**

- 직접융자방식은 정부가 자금 조성에서부터 융자대상 조건, 융자 대상자 선발까지 직접 수행
- 모든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됨

■ **전대 방식은 정부가 시중은행 또는 공공기관에 융자금을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대행하여 수혜자에게 융자해주는 방식**

- 전대방식은 정책 자금 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시중 금리 보다 저렴하게 금융기관에게 대출하면, 금융기관은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정책 자금 수혜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적격자에게 대출해주게 됨
- 전대방식은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여 공급한다는 점에서 직접융자와 비슷함
- 다만, 금융기관이 융자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실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직접융자와 차이가 있음

■ **이차보전은 민간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으로 정책 수혜자에게 융자해주고 정부는 시중금리와 정책금리[1] 간 차이를 민간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방식**

- 이차보전은 이자 차액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정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융자 대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줌

1) 정책금리는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6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제12조(대출금리)로, 제10조(융자금리)에 따라서 융자금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를 차감하여 적용

제10조(융자금리) ① 융자금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출금리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차감하여 적용한다.
1. 공공기관, 공기업 등과 같은 단일기관에 대한 대출 : 0.5%
2. 융자대상자의 수가 적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 : 1.0%
3.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 : 1.5%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융자사업의 수지현황,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자금수요자의 성격,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 및 융자계정의 수지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리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대출금리) 대출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까지의 국고채 5년물 유통수익률을 평균하여 소수점 두자리 단위로 조정하며, 해당 분기 동안 적용한다. 다만, 국채금리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의 금리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이차보전의 경우 정부는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간 차이에 대해서만 보조해 주기 때문에 대출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고 전대방식과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실은 금융기관에서 지게 됨

<융자금과 이차보전 규모>

▶ 직접융자방식과 전대방식을 포함한 융자금 규모는 2007년 24.5조원에서 2018년 33.0조원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재정 규모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2007년 10.6%에서 2018년 7%로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

▶ 이차보전은 2007년 6,803억원 규모에서 2013년 3,92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추진된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2018년도에는 6,006억원 규모로 증가

그림 1-2 융자와 이차보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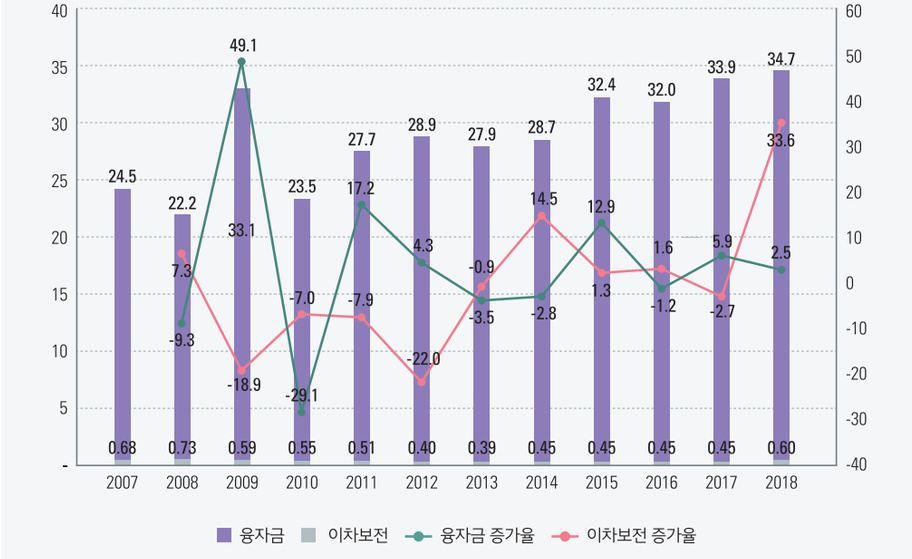

주: 1) 결산 기준
2) 융자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2장 참고

자료: 김지영 외(2008),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융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 신용보증방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 정부의 신용보증으로 대출받은 기업이 채무 불이행 했을 경우, 정부는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금융기관의 위험이 감소하게 됨

○ 우리나라는 1961년 신용보증기금 준비금제도가 실시됐고, 1967년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제도가 실시되었고, 신용보증 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있음

- 신용보증기금: 담보 능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목적으로 1976년 설립되었고, 일반 혁신기업, 수출기업, 영세소기업, 일반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함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기술혁신형 기업과 기술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9년 설립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세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199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이후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

○ 신용보증은 취급내용에 따라 일반보증, 특별보증, 특례보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관별로 취급하고 있는 보증 유형에 차이가 있음

표 1-1 기관별 보증종류 및 유형

	보증종류	보증 유형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제2금융보증, 시설대여보증, 이행보증, 무역어음인수보증, 상거래담보형보증
	특별보증	CBO·CLO보증, 중소·중견기업 P-CBO보증
	특례보증	광주민주화운동, 노사분규 관련 기업 등
기술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	대출보증, 비은행대출 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회사채보증, 사채인수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특별보증	부동산 담보부, 벤처특별, 무역금융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특례보증	서울시 개발사업 관련 등

자료: 박형근 외(2007), 신용보증제도의 운용현황과 과제, 한은조사연구 2007-11

<신용보증제도 유형>

▶ 신용보증제도는 운영 주체에 따라서 상호보증제도, 공공보증제도, 융자보증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상호보증제도: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가 회원의 금융기관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로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 채택
- 공공보증제도: 별도로 독립된 공적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보증해주는 형태로 주로 금융시장 발전이 늦은 아시아 지역에서 운용
- 융자보증제도: 일정한 보증조건을 미리 정해두고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 채택

■ 정부의 금융시장 지원 방식에 따라 자금조달, 융자집행, 사후관리 등에 차이가 있고, 정책목표 달성과 민간금융시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 방식의 활용도를 비교해보면, 정책목표 달성에는 직접융자가 유리한 반면 민간금융시장 활용 측면에서는 이차보전이 유리

○ 직접융자방식은 융자 대상자와 규모,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을 정부가 결정하므로 상대적으로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음

○ 금융기관, 민간자금, 이자율 측면에서 민간금융시장의 활용도를 보면, 이차보전은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융자 대상자 및 융자조건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민간금융시장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1-2 정부의 자금 지원 방식 비교

구분	직접융자	전대방식	이차보전
자금조달 주체	정부 등 사업 주관기관	정부 등 사업 주관기관	시중은행 등 사업 취급기관
대출 주체		사업 취급기관	
대출금리 결정		사업 주관기관	사업 주관기관
대출심사 주체		사업 취급기관	사업 취급기관
부실채권 처리주체		사업 취급기관	사업 취급기관

자료: 감사원(2016),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그림 1-3 정부 자금 지원 방식에 따른 활용도 비교

자료: 임소영(2014), "재정융자제도의 개선과 이차보전 확대방안"중 재정리

4) 재정융자 관리 절차

■ 재정융자의 관리절차는 크게 재정융자사업의 계획단계인 예산안 편성 및 심의와 사업을 실행하는 집행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두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관리절차를 살펴보았음

(1) 융자사업의 예산안 편성과 심의

■ 재정융자사업의 예산안 편성과 심의는 우리나라 예산 순기에 맞추어 진행됨

○ 재정융자사업은 사업 소관 부처가 융자사업별로 예산 규모, 융자금리, 상환 기간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융자조건을 결정함

○ 단, 재정융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임[2) 3)]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9호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에 따라 제외

3)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에 따른 융자사업 관리는 그림 1-4와 같음

그림 1-4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과 심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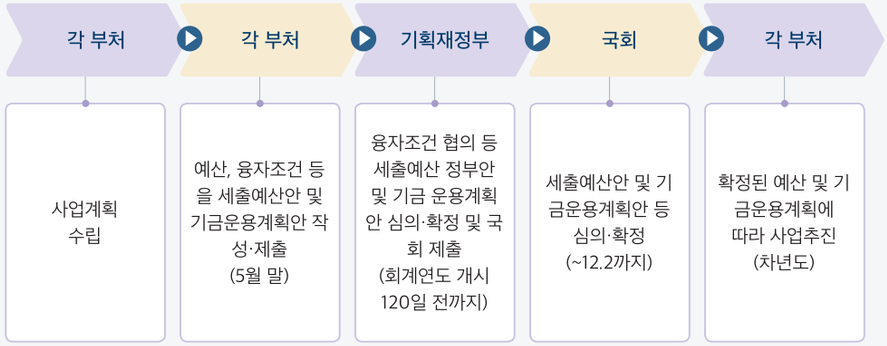

자료: 「국가재정법」

■ 융자 조건에 대한 결정

○ 융자사업별로 융자 금리의 결정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사업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결정함

○ 융자기간은 사업기간, 투자회수기간 또는 손익분기점, 융자 지원대상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됨

○ 사업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융자조건을 달리 적용할 실익이 없는 사업은 융자조건을 동일하게 조정

(2) 융자사업의 집행

■ **재정융자사업의 집행에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없고 개별융자사업들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관리절차는 융자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직접융자방식, 전대방식, 이차보전방식 등 자금을 조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관리 절차가 다름

○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정부의 융자 지원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 주관기관(사업 취급기관)이 사업공고를 내고, 융자신청 접수 및 융자심사 단계를 거쳐 융자금을 집행하게 됨

○ 융자방식별로 집행 절차와 그에 따른 취급기관은 그림 1-5와 같음

그림 1-5 유형별 재정융자사업 집행 절차

	사업공고	융자신청 접수	융자심사	융자집행
직접융자	사업 주관기관	사업 주관기관	사업 주관기관	사업 주관기관
전대	사업 주관기관	사업 취급기관	사업 취급기관 (사업 주관기관 등이 대상자 추천 후 사업 취급기관이 최종 결정하는 형태가 대다수)	사업 취급기관이 사업 주관기관에 자금대여 신청 후 사업비가 대여되면 이를 통해 융자대상자에 융자금 지급
이차보전	사업 취급기관	사업 취급기관	사업 취급기관	사업 취급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융자금 지급

자료: 1) 기획재정부
2) 감사원(2016),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의 '창업기업자금'사업으로 융자금이 수혜자에게 지급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소관부처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융자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개입하여 직접 수행하게 됨**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경우, 사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공고를 내면 중소기업은 공단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한 후 적합 기업으로 승인되면, 신청 중소기업에 지원 결정을 통보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금관리를 맡긴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융자해주게 됨

그림 1-6 융자사업 집행 사례(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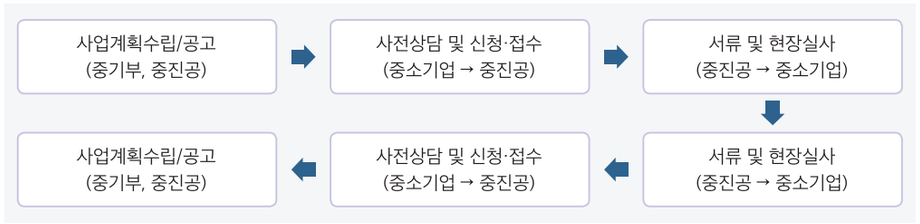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사업설명자료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4]을 통하여 이차보전방식의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융자 대상자가 취급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면, 취급기관은 심사 및 적합자에게 대출 등 대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를 처리하고, 이후 소관부처는 시중금리와 융자에 적용된 금리 차액을 취급기관에 지원해줌

○ 정책자금 이차보전의 경우, 정부가 정책자금 관련 시책을 시행하면 농업인 등은 취급 금융기관에 신청, 이후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관련 심사 및 정책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은 정부에 이차보전금 신청 및 정부는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하게 됨

그림 1-7 이차보전 사업 집행 사례(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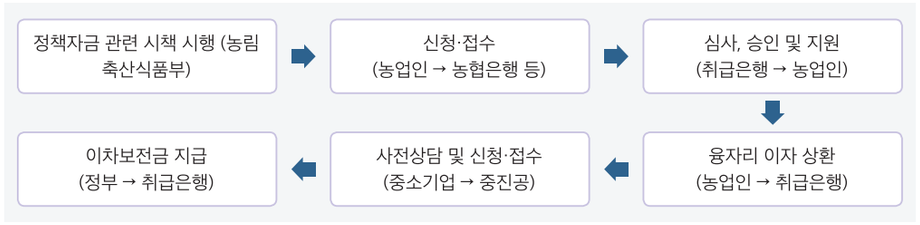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사업설명자료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는 동 사업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2019년 본예산 기준 4,206억원임

○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의 경우, 부채대책 시행(정부) → 농업인 신청 → 부채심사위원회 심사 → 부채대책자금 지원(저리대체 및 상환기간 연장 등/대출취급 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등 신청(금융기관) 및 지급(정부)의 절차를 통해 추진

5) 재정융자 관리시스템

■ 재정융자사업은 앞 절에서 살펴본 관리 절차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하여 회계·기금별로 예산이 배정되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또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음

○ 융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중 중앙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직접 사용하는 12개 소관, 22개 회계·기금, 1개 연계 기관[5]이 디브레인을 통해 재정융자사업의 집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음

○ 디브레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그 외의 사업 추진 기관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시중은행을 통하여 집행과정을 관리

■ 디브레인을 통한 융자사업 관리는 수혜자에게 정부 기관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융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위임하여 집행하게 되며, 시스템상 절차는 융자약정등록, 융자집행, 융자회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융자약정등록은 융자 취급기관과 체결한 약정 내역을 등록하는 것, 융자집행은 융자금을 실제 집행하기 위해 지출을 요청하는 것, 융자회수는 원리금 회수주기 도래 시 수입으로 징수요청을 하여 융자취급기관에 납입을 고지하는 업무

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05.02. 기준

그림 1-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융자금 관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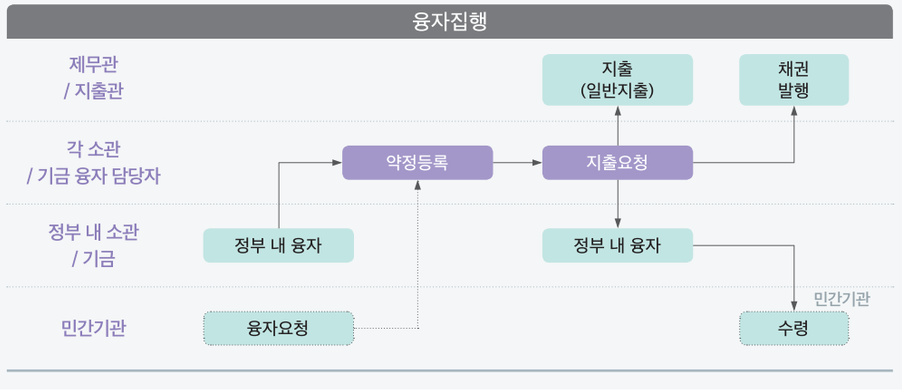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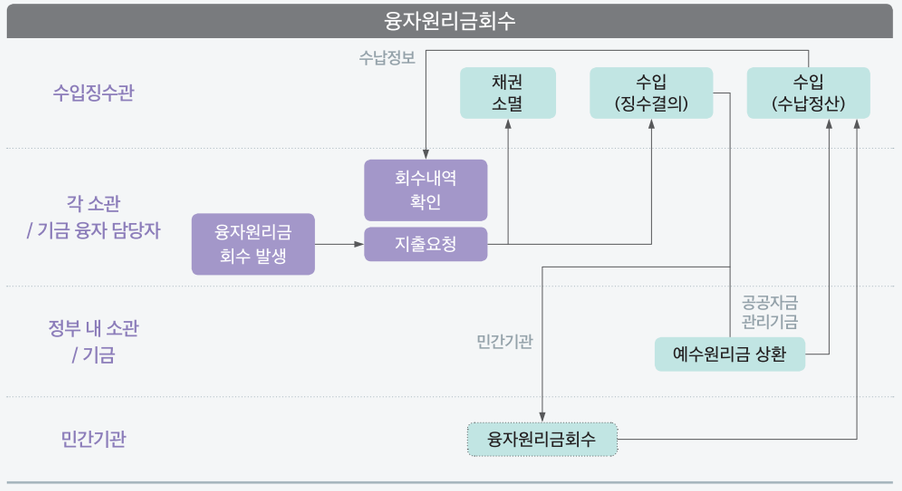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 약정등록 진행절차는 약정체결, 거래처 등록, 융자사업 등록, 약정등록의 순으로 진행되며, 정부 내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융자신청인 경우에는 약정체결 없이 등록 진행됨
- 융자집행 진행절차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집행하고, 융자약정등록, 융자지출요청, 자금이체 순으로 진행
  - 각 중앙관서의 회계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융자집행사유 발생 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회계 또는 기금 관리자에게 융자금을 요청
  - 융자금 신청을 받은 회계·기금담당자는 융자신청내용을 등록하거나 약정체결 후 등록
  - 융자금 신청을 받은 회계·기금담당자는 재무관·지출관에게 융자지출을 요청하고 재무관·지출관은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 집행
- 융자원리금회수는 회수사유 발생 시 징수요청, 고지서 발송, 융자원리금 수납, 회수내역 확인의 절차로 진행됨
  - 융자원리금의 회수사유 발생 시 수입징수관에게 융자원리금의 회수를 위한 징수를 요청
  - 수입징수관은 융자담당자의 징수요청을 받아 징수결의를 하고 융자취급기관에 고지서 발송
  - 수입징수관은 한국은행영수내역을 통해 융자취기관에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한 후 수납정산하고, 융자 담당자에게 수납내역을 통보
  - 융자담당자는 수납된 내역을 시스템으로 확인

■ **자체 시스템을 통해 융자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의 사례로, 창업기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직접대출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그림 1-9와 같이 관리시스템을 통한 융자사업 관리는 융자 신청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을 하면, 기업평가 시스템에 의한 평가 및 융자결정 등의 절차로 진행됨

그림 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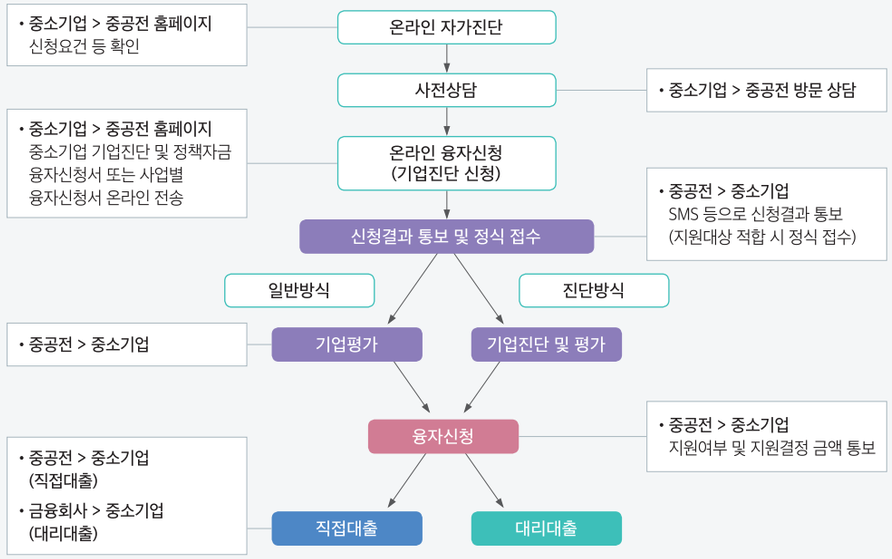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그림 1-10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사후융자관리 절차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2012),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시스템」

- 직접대출이 확대되면서 2004년부터 정책자금 직접대출 업무 지원을 위한 산업분석 및 신용평가 모니터링시스템, 미래신용추정시스템, 재무이상치체크시스템 등을 추가, 2005년에는 자금집행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솔루션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재구축[6]하였음
- 사후관리제도로 대출기업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기업의 신용도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6) 중소기업진흥공단(2012),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시스템」의 '제7절 기금 건전성 유지와 리스크 관리' 부분 인용

2. 재정융자제도의 변천[7]

■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보완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재정융자사업은 시대에 따라 경제상황과 정부가 세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 분야를 달리하며 변화해 왔음

- 경제성장기에는 기간산업 육성, 농업구조 개선 및 수출산업 진흥 등을 위한 부문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였고, 최근에는 취약계층의 주택 지원, 중소기업 지원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 국가 주도하에 경제 성장 정책을 펼쳤던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이전에는 경제개발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이 주로 이루어짐
- 이후에는 특별회계를 통한 융자 지원은 줄어들고,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개별 기금의 정책 목표 하에 개별적으로 재정융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재정융자제도는 재정투자와 재정융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제도가 변화했는데, 시기별로 융자와 투자를 담당하는 특별회계가 변화하면서 재정투융자제도가 변화

<재정투융자제도란?>

▶ 재정투융자는 재정지출 중 ①자본적 지출과 ②금융적 투융자 지출을 의미

① 자본적 지출은 정부지출 중 인건비와 소비적 물건비를 제외한 건물·설비·기계·도로·교량 등 정부 자산을 증대시키는 일체의 지출

② 금융적 투융자 지출은 정부가 재정자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유무상 자금을 민간 산업이나 정부 정책 사업에 출자나 융자 형태로 지출하는 것

▶ 재정투융자제도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후 정부의 적극적 경제개입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민간에 정책금융을 제공함으로써 ① 자원배분 기능, ② 경기조절기능등 정부의 경제정책 목적을 달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1) 대충자금특별회계 (1954~1961)

■ 재정융자사업은 1954년 「대충자금(對充資金)특별회계법」이 시행에 되면서 제도화됨

- 이 시기 정부의 재정정책은 재정투융자와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미국 등의 원조자금을 재원으로 재정투융자는 대충자금특별회계」[8]에서 추진하고 재정안정화는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 추진
- 대충자금특별회계는 경제재건과 재정금융의 안정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원조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대충자금특별회계의 융자계정[9]을 통하여 재건투자와 농촌부흥 기타 자금 수요를 위하여 다른 특별회계 또는 민간기업체에 융자

7) 재정융자제도의 변천은 성낙선(2007), 「재정융자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이유를 참고하여 작성됨

8) 「대충자금특별회계법」은 무상으로 공급하던 원조의 종결로 인하여 이 자금을 운영, 관리하던 대충자금특별회계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1972년 폐지되었음

9) 대충자금특별회계는 융자계정 외에 적립금계정, 징수계정, 전입금계정으로 구분

– 융자계정은 원조금을 이용하여 석탄 등 기간산업 육성, 생활필수품 등 소비재공업 등을 지원하였음

○ 원조금 도착이 지연되고 1957년 이후 원조금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사업규모가 축소

– 대충자금 외에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양곡관리특별회계,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재정융자금으로 이용하려 노력하였으나 활발히 추진되지 못함

표 1-3 개별 특별회계를 통한 융자사업 사례(1950년대)

	내용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 1957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 - 과거 일본인이나 일본법인·기관 등의 소유였던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주택, 중소기업, 농업 등의 분야에 융자
양곡관리특별회계	- 1958년 「양곡관리특별회계법」일부개정으로 융자사업 시행 - 잉여금을 농업자금(영농·수리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운용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 1958년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으로 융자사업 시행 - 농지대가계정과 귀속농지관리계정을 통합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투자자금에서 융자금으로 전환하여 농지개발자금의 융자사업 추진

2)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1962-1973)

■ 1962년부터 5년 단위로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재정투융자 규모가 확대됨

○ 재정투융자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정자금을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회계처리

○ 재정융자는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10](1962년 설치, 1973년 폐지)에서 담당하고, 재정투자는 경제개발특별회계(1963년 설치)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함

○ 1966년 새롭게 설치된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11]에서 농·수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의 경제개발사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추진하면서,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융자와 재정투자를 분리하여 운영한 개편 목적이 퇴색됨

10)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약금, 회수금, 재정자금운용에 의한 이자와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융자금, 원금상환금, 예탁금이자, 자금운용수수료 기타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함

11)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1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받는 자금에서 생기는 원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기 위하여 1966년 설치됨. 계정은 징수금계정과 차관계정으로 구분하고, 차관계정은 경제개발을 위한 융자, 차관원리금상환 및 기타 차관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지출을 관리하였음. 이후 1976년 자금관리특별회계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

3) 경제개발특별회계 (1974~1976)

■ 1974년에 「경제개발특별회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서 추진하였던 재정융자사업들이 경제개발특별회계로 이관됨

○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가 1973년 폐지되면서 재정자금으로 지원했던 사업자금 중 장기저리자금은 경제개발특별회계에 포함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함

○ 투자사업만을 담당했던 경제개발특별회계를 투자계정, 융자계정, 대충자금계정으로 구분하고,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서 추진했던 재정융자사업은 융자계정에서 수행하게 됨

<경제개발특별회계>

▶ 1962년 「경제개발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경제개발특별회계는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의 투자사업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됨

- 이전의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와 경제부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의 편성집행절차와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함
-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대충자금특별회계와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정부의 투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사용

▶ 1973년 대충자금특별회계와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이 회계에서 수행하던 사업이 경제개발특별회계로 이관됨

▶ 1977년 「경제개발특별회계법」이 폐지되면서, 경제개발특별회계의 투자계정은 일반회계로, 융자계정은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자금운용계정으로, 대충자금계정은 자금관리특별회계의 대충자금계정으로 승계됨

4) 자금관리특별회계 (1977~1987)

■ 1977년도에는 「자금관리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재원조달과 운용과정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경제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자금관리특별회계를 신설하였음

○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설치는 재정차관자금과 재정예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할 목적으로 차관자금계정, 청구권자금계정, 대충자금개정, 자금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 이 과정에서,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재정투자와 융자가 같은 회계 안에서 운용됐던 것이 재정융자는 자금관리특별회계로 재정투자는 일반회계로 다시 이원화됨

5) 재정투융자특별회계 (1988~1996)

■ **재정에 의한 출연·출자·융자를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1987년 「자금관리특별회계법」을 전부개정하고, 1998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설치**

○ 국민 경제 운용상 주요한 사업 등에 대한 재정융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금관리특별회계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확대·개편

○ 이 회계에 정부의 출자 및 출연 기능을 추가하고,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융자기능을 보강하여 재정투융자자금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였음

6) 재정융자특별회계 (1997~2006)

■ **1997년부터 재정투융자를 담당하던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재정융자특별회계로 명칭이 개정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이 시행되면서 재정융자와 차관관리만 수행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자계정에서 수행하였던 사회간접자본시설·농어촌개발 및 중소기업기원 등에 대한 투자는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수행하도록 함

–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발생한 주식매각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출자계정의 세입이 경제위기로 인한 증시여건 불안정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어려워졌고, 세입 부족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했기 때문에 기능이 이관됨

■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한 융자사업이 축소되고, 개별 특별회계를 통한 융자사업 추진이 확대됨**

○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는 정부 정책 주도하에 추진하는 중점분야를 지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개별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은 부담금 등 자체 세입으로 융자금을 충당하여 개별 목적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

표 1-4 개별 특별회계를 통한 융자사업 사례(1990년대)

	내용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991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정에 따라 설치 - 1993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전면개정으로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고 1994년부터 융자사업 추진 -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융자사업 지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1994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정에 따라 설치 - 투자계정과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 - 한국석유개발공사 등에서 진행하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지원
환경개선특별회계	- 1994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정에 따라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 환경오염방지 및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지원

7) 국가재정법 제정 (2007년 이후)

■ **「국가재정법」의 제정(2006년 10월)으로 2007년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이 폐지되면서 재정융자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관리하도록 이관되고, 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기타 기금에서 융자사업 추진**

○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하였음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

○ 정부내 예탁, 융자 등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중심의 재정운영의 틀을 조성하여 재정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였음

■ 최근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융자사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개별 기금을 중심으로 재정융자를 수행하고 있음

-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융자는 복합화물터미널건설, 국립병원 건설 등 SOC 사업 및 국공채, 지방채 인수 사업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지방채, 지방교육채 인수 사업 위주로 축소됨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 창업기업자금 융자사업,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융자사업 등 개별 기금을 통하여 융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4개의 특별회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포함한 28개 기금을 통해 재정융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림 1-11 재정융자 관련 회계·기금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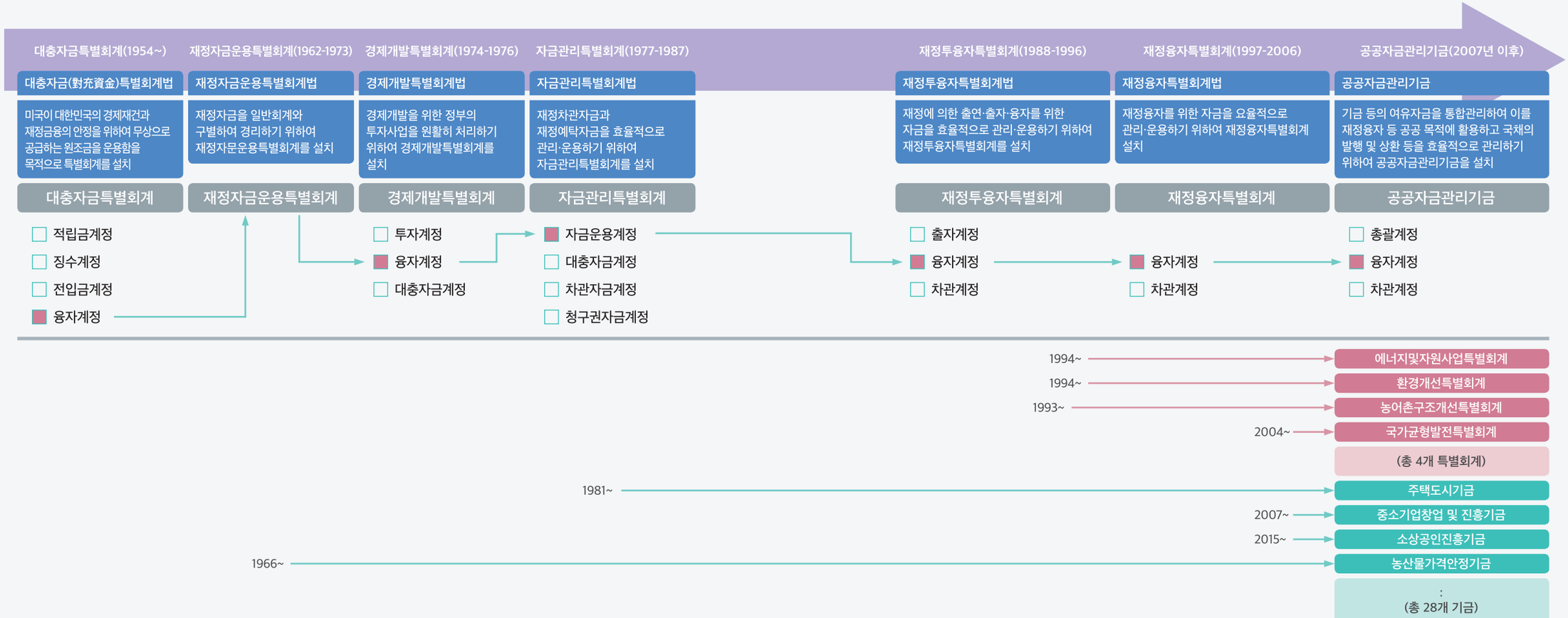

주: 2019년 기준으로 부담금 등 자체 세입으로 융자금을 충당하여 개별 목적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4개의 특별회계와 28개의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포함)이 있음

3. 재정융자 효율화 제고 방안

1) 재정융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 재정융자사업을 관리하는 통일된 시스템 부재에서 발생하는 관리체계의 복잡성

- 1절 재정융자제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재정융자사업관리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사용하는 22개 회계·기금이 있고 그 외에는 개별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
- 개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는 재정융자사업의 경우, 예산과 결산 단계에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정보가 집계되고 있으나 집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는 통합되어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통합관리시스템 부재 외에 재정융자사업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제기되는 점은 다음과 같음

- 일관된 관리체계 부재는 재정융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집행 부진과 같은 관리 및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12)]
- 개별 융자사업 간 정책금리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 사업별로 지원하는 수준에 있어서 편차가 크고 일부 과도한 저금리로 운영되고 있음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정책금리를 기준으로 시장의 변동금리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신속하게 시장금리를 반영되지 못함

12) 재정융자사업은 각 세부사업별을 추진하는 각 소관부처에서 융자방식 및 융자조건 결정,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 등을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재정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016년 감사원의 재정융자사업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결과, 일관된 융자조건 결정 기준 미비, 부당집행 등에 대한 집행관리 규정 미비, 재정보조 효과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사후평가 미흡 등이 지적되었음

■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융자사업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재정융자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준과 원칙이 없어 권고에 그치고 있음

- 집행실적 저조, 지원 필요성 미흡, 민간 금융시장 지원 가능 사업은 융자사업 규모를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권고
- 융자사업별로 지원 대상·자금성격·시중금리 변동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리·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
- 또한 수혜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재정융자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융자 사업들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성낙선 외(2007)은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는 재정융자사업을 통폐합하고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는 각각의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검토하고, 재정보조율 등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 박상원 외(2009)에서는 재정융자 사업별로 재정보조율을 계산하여 분야별, 부처별, 대상별로 일관성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융자 사업의 금리 유형을 변동금리로 일원화하고 융자조건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융자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정보 관리 및 사업별 조건 비교를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 시스템을 통해 회계 · 기금 간 유사 · 중복 사업의 파악이 용이해지고, 융자금에 대한 예산-집행-결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정 흐름 파악이 가능
- 일반국민부터 정책결정자까지 필요한 융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함으로써 융자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 사례>

▶ 정부는 보조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제도 개혁 및 시스템 구축

- 2017년 보조금 개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도입하고, e나라도움 구축으로 보조금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 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통합 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림 1-12 보조금 프로세스의 시스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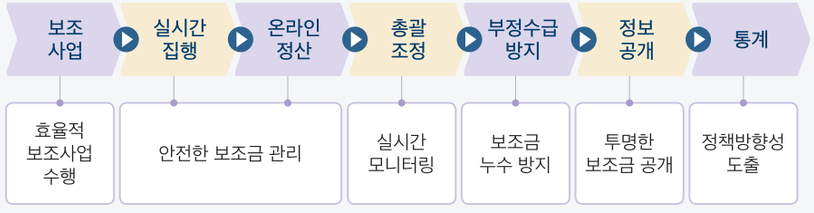

자료: e나라도움 운영단

2) 재정융자 축소와 민간금융 활용

■ 재정융자 등 정책금융 지원을 통한 정부의 민간금융시장 보완이 여전히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음

- 재정융자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민간금융시장이 양적으로 성장, 저금리 기조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자금 공급방식의 전환 필요
- 민간금융시장과 정부 재정융자를 통한 GDP 대비 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GDP 대비 민간금융시장 대출 비중은 1965년 6.8%에서 2018년 87.8%로 양적으로 성장하였음
- 1998년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15.2%로, 정부의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높았으나, 2000년대부터 이어지는 저금기 기조에 따라 정부의 대출금리와 시중은행 대출금리 간 차이가 작아짐
- 또한, 민간금융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낮아짐

그림 1-13 GDP 대비 대출금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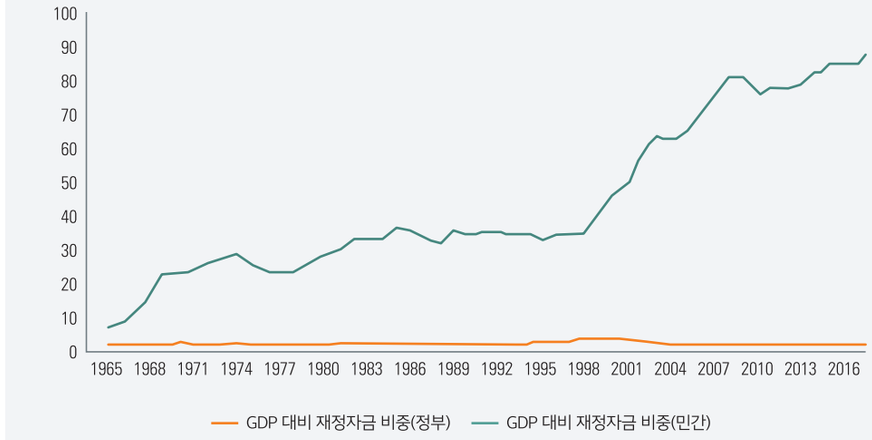

주: 대출금은 예금은행의 자금별 대출금(말잔)에서 금융자금과 재정자금으로 대출된 금액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1-14 정부 대출금리와 예금은행 대출금리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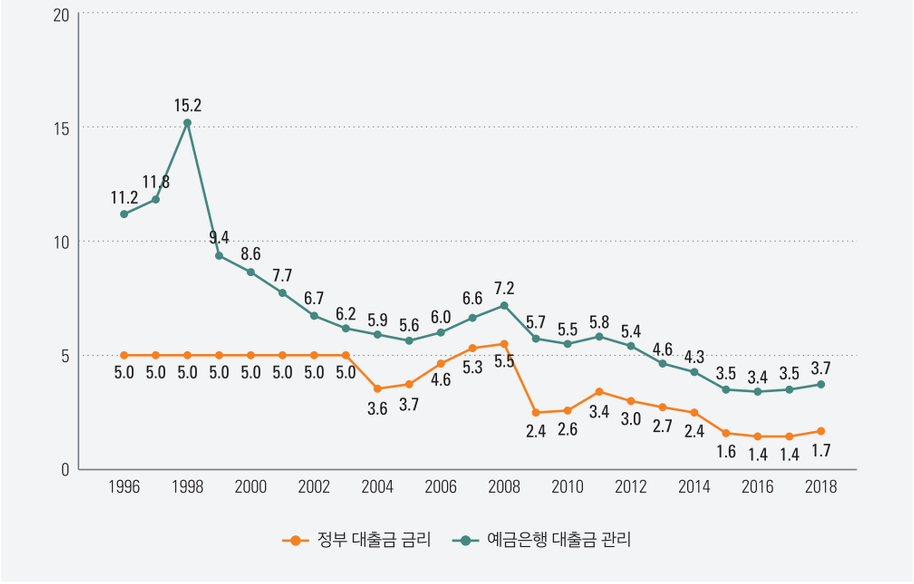

주: 예금은행 대출금 금리는 대출에 대한 가중평균금리로 신규취급액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정부는 재정효율화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자금 공급을 줄이는 대신 민간 자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다만, 재정융자는 회계, 기금제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개편 등이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재정융자를 축소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하면서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간 차이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으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김동건 외(2002)는 재정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정융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구축, 그리고 기금·특별회계 정비 차원에서 융자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김지영 외(2008)는 민간시장의 활용도 및 경제적 효과, 재정적 효과, 정책목표 달성 등에 대해 재정융자방식과 이차보전방식을 비교하면서 이차보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 및 계층을 위한 전문금융기관 보유, 기금 및 특별회계의 개편 등이 충족되어야 함을 언급함
- 임소영(2014)은 이차보전 방식을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재정융자 사업의 필요성을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재점검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함

■ **민간금융시장의 자본 활용도 제고와 함께,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는 직접적인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효과적인만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융자의 효율화를 제고가 필요함**

- 민간금융시장에 의한 지원은 자금 규모, 지원 여부 등이 민간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를 통한 재정융자 지원과 비교하여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제도적으로 민간금융시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은 민간금융을 활용하도록 전환하면서, 정부의 직접접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 재정융자가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2장

재정융자 현황

1. 재정융자 규모
   1) 융자지출
   2) 융자원리금
   3) 분야별 융자 집행률
2. 회계·기금별 현황
   1) 특별회계별 융자
   2) 기금별 융자
3. 분야·부문·부처별 현황
   1) 분야별 융자
   2) 주요 분야의 부문별 융자
   3) 부처별 융자

1. 재정융자 규모

1) 융자지출

■ 2007년~2018년 기간 동안 재정융자는 2007년 24.5조원에서 2018년 33.0조원으로 규모가 증가

- 융자 규모 증가율은 2007년~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3.2%씩 증가
- 융자금의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재정에서 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0.6%에서 2018년 8.1%로 감소하였음

■ 재정융자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하여 추진되고, 2018년 기준으로 기금이 전체 융자금의 98.1%인 34.1조원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재정융자사업이 기금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음

- 기금과 특별회계의 융자금 규모는 2007년도에 각각 23.0조원, 1.5조원(전체 융자금 대비 93.8%, 6.3%)에서 2018년에는 34.1조원과 0.65조원(전체 융자금 대비 98.1%, 2.0%) 규모
- 전체 융자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금을 통한 융자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특별회계를 통한 융자는 감소
- 융자지원 성격이 정부 주도하의 경제개발에서 개별 기금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 위주의 재정융자사업으로 성격이 변화했기 때문

그림 2-1 재정융자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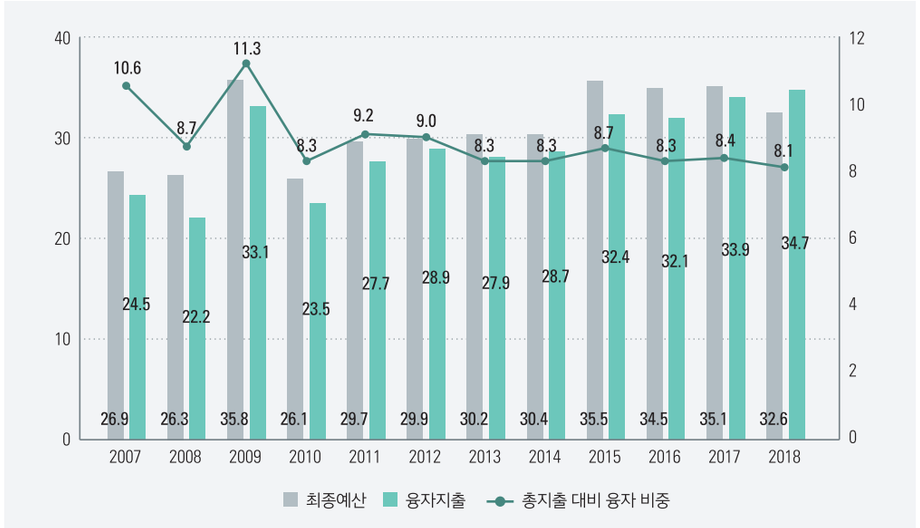

주: 결산 기준. 단, 2018년도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그림 2-2 회계·기금별 융자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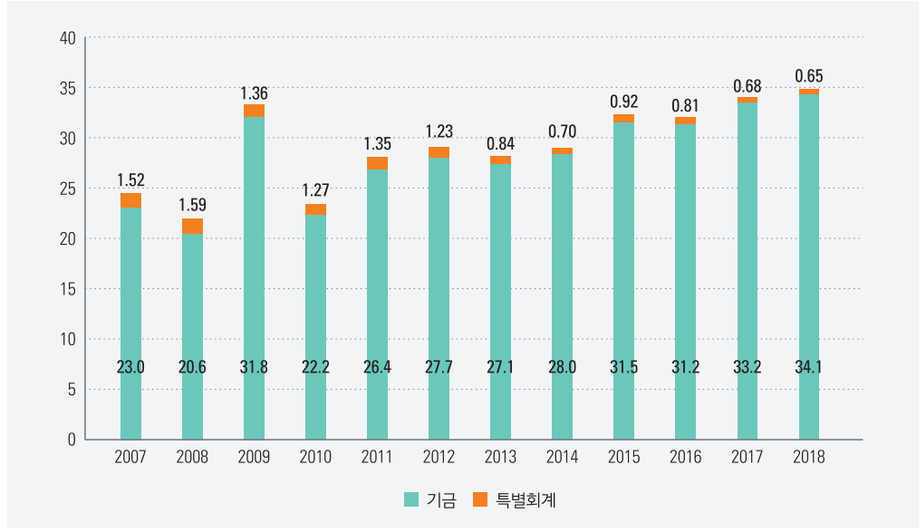

주: 결산 기준. 단, 2018년도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융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총지출 증가율 보다 변동성이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융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기금의 신축적 운용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2009년도의 경우 융자금은 전년 대비 49.1% 급증하였는데, 미국발 금융위기에 발생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집중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융자금이 증가했기 때문임[13)]
- 특히 산업금융지원 부문의 융자금이 2008년 2.7조원에서 2009년 4.5조원으로 전년대비 62.7% 증가했는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긴급경영안정, 성장기반 융자사업 등의 융자금이 증가하였음
- 또한, 주택 부문의 융자금이 2008년 9.5조원에서 2009년 12.1조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임대 주택 공급 물량 증가 등 2008년에 발표한 주택종합계획[14)]에 따른 사업 확대에 있음

그림 2-3 전년 대비 재정융자 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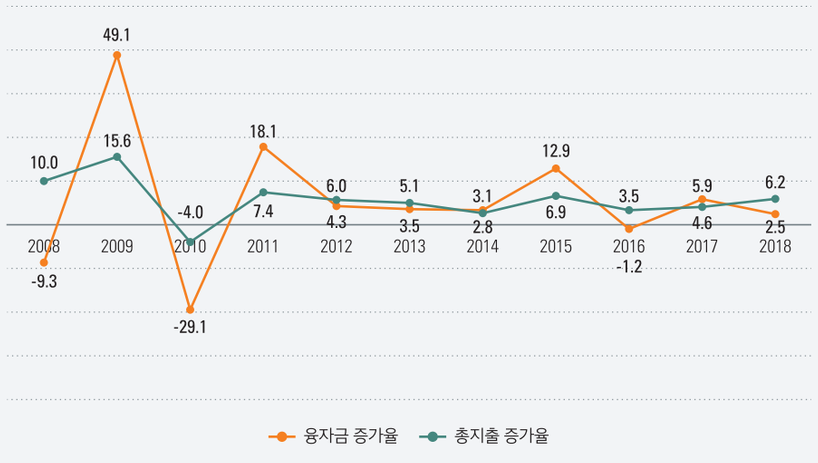

주: 결산 기준. 단, 2018년도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3)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해로, 추가경정예안 17.8조원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37.1%인 6.6조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5.8%인 4.6조원이 편성되었음

14) 2008년 5월에 기존주택 전세 임대 융자사업을 통해서 2008~2012년까지 총 46,800호 공급 등 주택종합계획을 발표

2) 융자원리금

■ 융자 수입 측면에서 융자원금회수 규모를 보면, 2007년 20.7조원에서 2013년 33.3조원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 융자 회수 규모가 감소

- 융자지출 규모는 2013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원금 회수 규모는 2013년을 전후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감소하는 추세
- 융자금은 사업의 목적, 대상 등 다양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융자 대출과 상환의 시차가 존재함

그림 2-4 연도별 융자원금회수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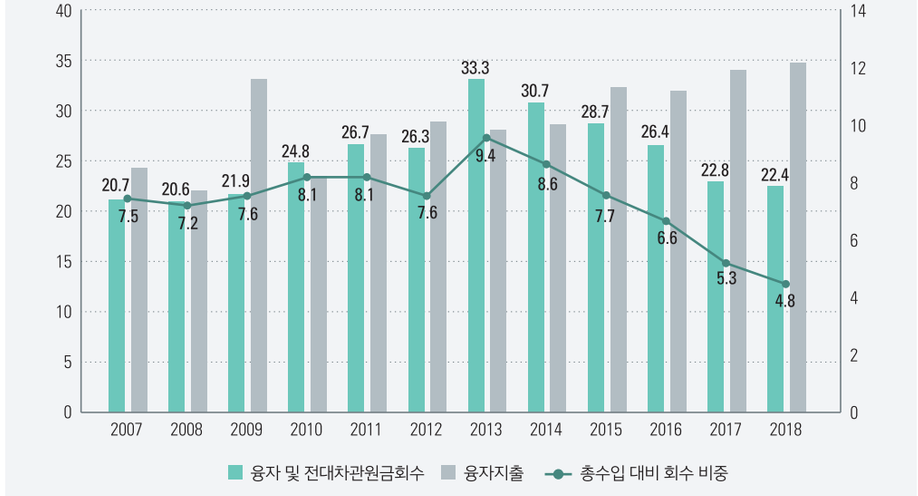

주: 결산 기준. 단, 2018년도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융자로부터 발생 되는 이자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 10.0조원에서 2008년 7.2조원, 2010년 5.9조원, 2013년 4.7조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 이후부터는 약 3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15)]

그림 2-5 연도별 융자 이자 수입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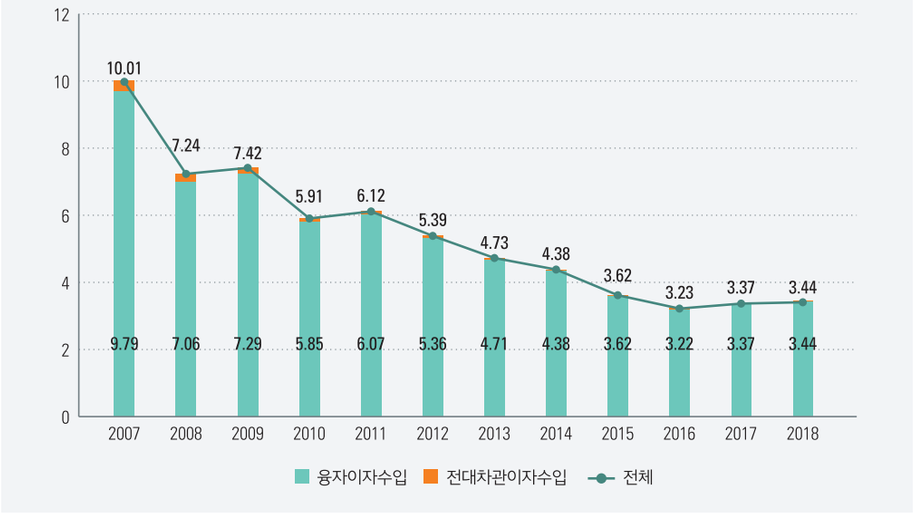

주: 1) 융자이자수입은 세목 중 기타민간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의 합으로 계산함
2) 결산 기준. 단, 2018년도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순융자 규모>

▶ 당해 연도 융자지출에서 원금 회수금을 차감한 순융자 규모를 보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순융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12.3조원임

▶ 2010년, 2013년, 2014년도를 제외한 연도에서 융자지출이 원금 회수보다 크게 나타남

▶ 참고로, 여기에서 계산한 순융자 규모는 융자금에서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 금액을 뺀 값으로 「한국통합재정수지」에서 발표하는 융자의 범위에는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본 보고서의 순융자 금액과 차이가 있음

그림 2-6 순융자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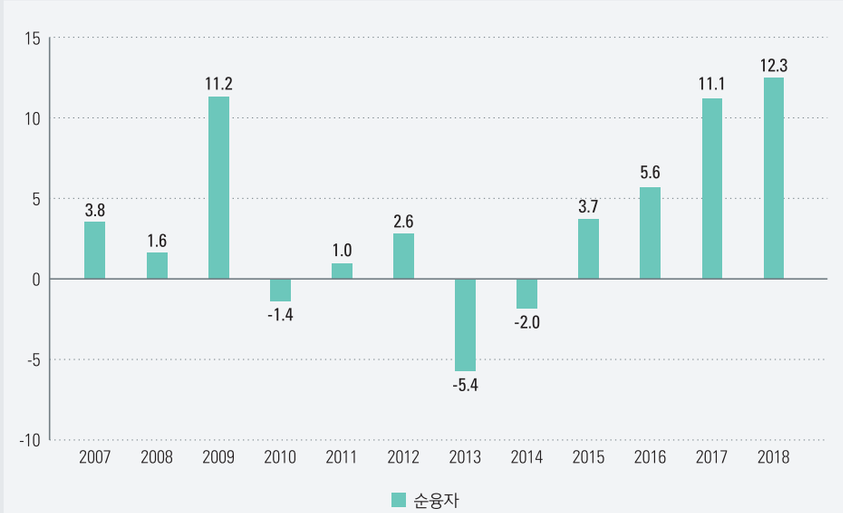

자료: 1) 결산 기준. 단, 2018년도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준
2) 순융자 = 융자금 -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5) 앞에서 설명한 융자금과 융자원금회수금은 일정 시점(당해년도)의 규모로, 융자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의 누적 규모가 아닌 반면, 이자 수입은 기존에 이루어진 누적 융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임

▶ 재정융자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로는 정부가 발행하는 「한국통합재정수지」, 「채권현재액총계산서」, 그리고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 등이 있는데, 융자의 포괄 범위, 측정 방법 등에 따라서 융자 규모가 다름

그림 2-7 통합재정의 순융자 규모 추이 (단위: 조원)

자료: 1)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
2) 통합재정의 융자지출은 예금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금, 기타 민간융자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출자금, 예금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금 등으로 구성됨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통합재정수지」

3) 분야별 융자 집행률

■ **재정융자의 집행률을 통하여 계획 대비 지출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90%이상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95%이상 집행되고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융자금 규모가 큰 상위 3개 분야의 집행률을 보면 각각 97.8%, 99.6%, 94.7%로 대부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 집행률의 경우 2010년까지 90%미만이었으나, 2011년 이후 90%이상 집행되고 있음
- 전체 융자금 집행률이 저조했던 2008년의 경우, 융자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사회복지 분야의 집행률이 80.5%로 낮았던 것에 기인함
- 융자금 규모가 작아 2008년 전체 집행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보건 분야, 통일·외교 분야의 집행률 또한 각각 46.3%, 30.0%로 낮았는데, 이는 응급의료시설개선 사업과 경제협력기반조성 사업에서 융자금이 집행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음

그림 2-8 융자 집행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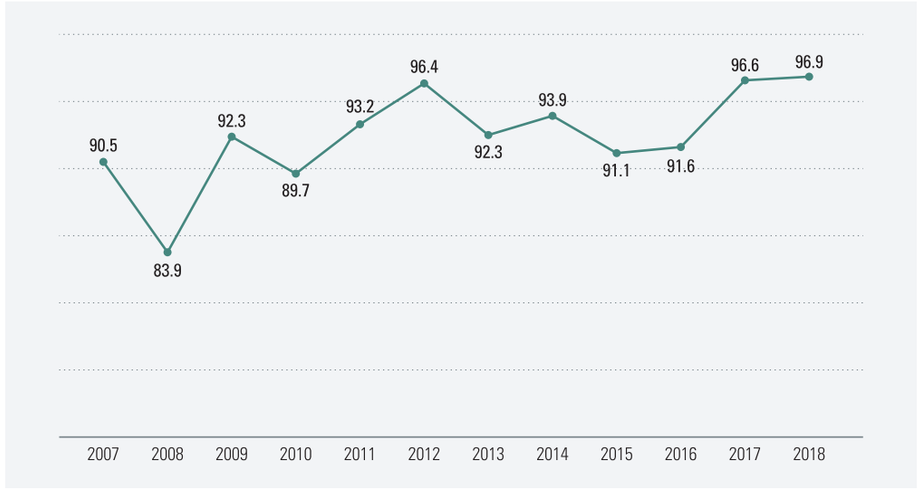

주: 집행률 = (세출(지출)액/예산현액) *1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분야별 융자 집행율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회복지	86.9	80.5	88.4	86.9	91.2	96.5	92.0	96.1	98.0	96.3	98.5	97.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9.5	99.5	99.4	100	99.8	100	97.7	100	95.2	100	99.1	99.6
농림수산	96.1	92.7	95.3	96.3	98.1	96.4	87.0	83.5	82.7	84.8	89.8	94.7
통일·외교	65.7	30.0	62.8	62.9	64.2	72.1	86.9	67.1	66.9	84.7	74.2	77.0
문화및관광	90.9	92.5	87.7	83.8	99.6	99.5	99.2	84.9	89.6	96.7	100	94.1
교육	86.6	96.7	92.7	99.6	98.6	93.5	94.3	98.9	97.8	92.6	84.0	98.3
환경	98.7	98.8	100	100	100	100	97.0	74.2	73.4	98.8	94.7	99.4
국방	98.2	98.4	96.4	93.0	91.2	90.3	95.2	91.9	70.4	95.9	98.1	96.7
통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일반·지방행정	92.2	68.7	96.7	95.5	98.8	99.4	100	85.3	14.2	4.9	1.2	0.0
과학기술	100	100										
국토및지역개발	100	0.0										
교통및물류	90.8	86.8	100	55.1	91.5	100						
보건	100	46.3	100	100	100	100	100		100			
전체	90.5	83.9	92.3	89.7	93.2	96.4	92.3	93.9	91.1	91.6	96.6	96.9

주: 집행률 = (세출(지출)액/예산현액) *1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그림 2-9 주요 분야의 부문별 융자 집행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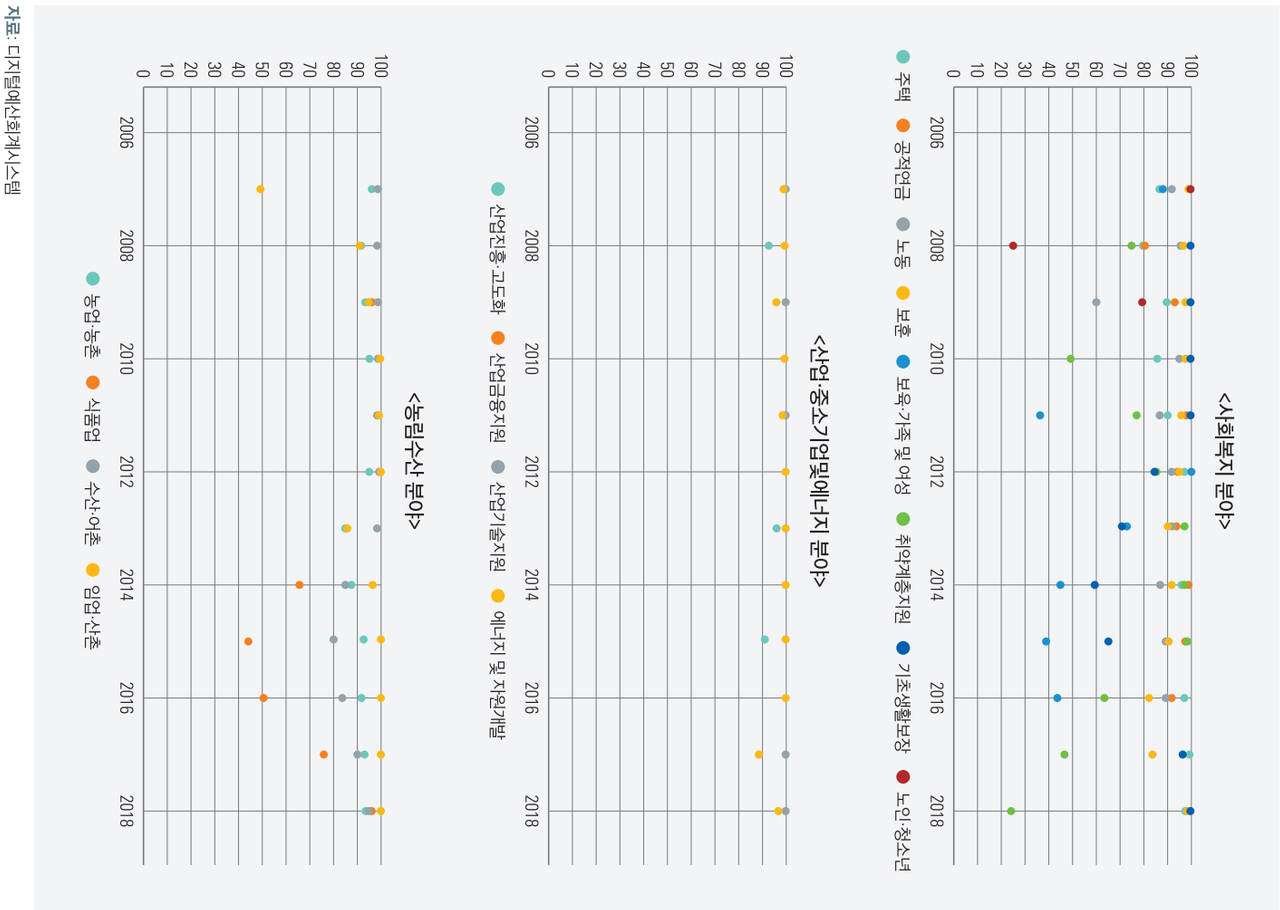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1) 특별회계별 융자

■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융자사업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07년 1.5조원에서 2018년 0.6조원으로 연평균 7.4% 감소

- 특별회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 규모가 2007년 1.1조원에서 2018년 3,685억원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특별회계 융자금 비중이 감소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추진하던 재정융자사업 중 2007년 4,260억원 규모로 운영되던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이 2009년 3,582억원, 2015년 1,438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이후 중단되면서 특별회계를 통한 융자 규모가 크게 감소함

그림 2-10 특별회계별 융자금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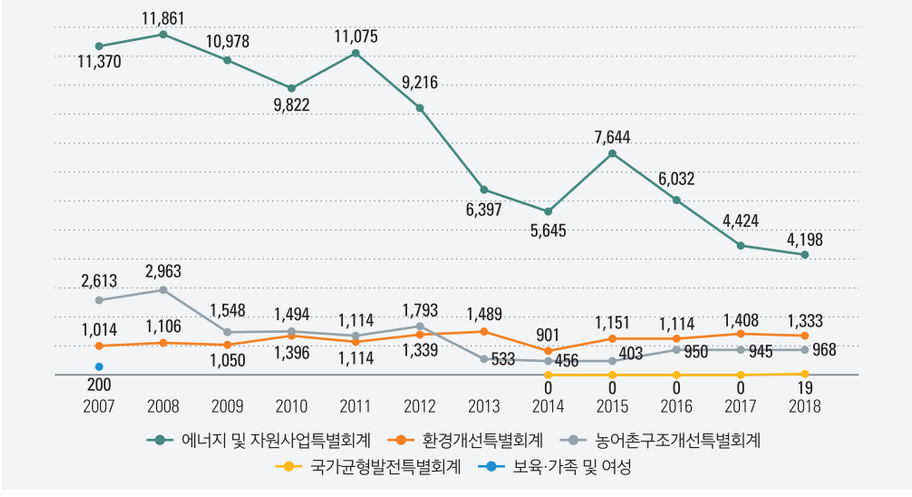

주: 결산 기준. 단, 2018년도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세부 사업수는 2007년 23개에서 2014년 14개로 감소한 이후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14개 세부사업이 운영있음

- 2019년도 기준으로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해외자원 개발 특별융자, 재활용산업육성융자 사업 등이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

표 2-2 특별회계별 융자 현황 및 주요 사업(2019년도 기준) (단위: 억원, %, 개)

	융자금(비중)	사업수	주요 사업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3,685 (1.1)	6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해외자원 개발 특별융자, 도시가스공급 배관사업 등 운영
환경개선특별회계	1,284 (0.4)	1	재활용산업육성융자 운영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220 (0.4)	6	산림사업종합자금, 귀산촌인 창업자금지원, 동물용 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재해대책 등 운영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40 (0.0)	1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사업 운영

주: 비중은 전체 융자금에서 개별 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기금별 융자

■ 기금을 통해 지출되는 융자 규모는 2007년 22.9조원에서 2018년 34.1조원으로 연평균 3.7%씩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융자 규모의 증가는 기금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이 2007년 10,0조원에서 2018년 18.6조원으로 연평균 6.5%씩 증가한 데에 있음
- 또한, 2015년에 설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융자사업 추진으로 융자 규모가 커짐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2007년 2.9조원, 2009년 6.8조원, 2015년 2.1조원, 2016년에 1.5조원으로 융자금의 규모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방채, 지방교육채 인수 융자금의 규모 확대에 따른 것임

그림 2-11 주요 기금별 융자금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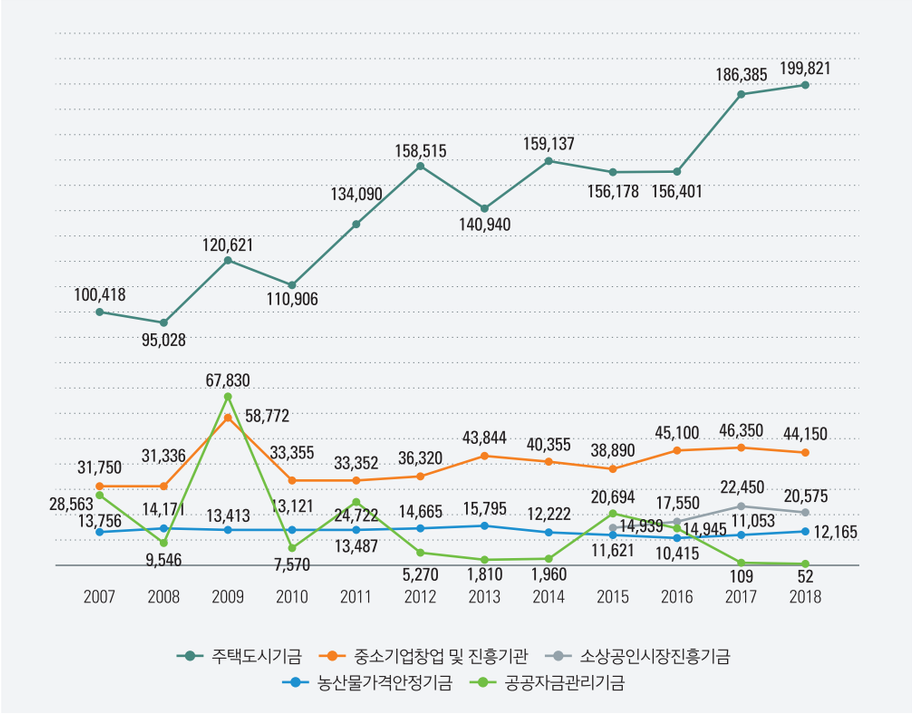

주: 1) 결산 기준. 단, 2018년도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준
2) 2007년~2018년 기간 동안 재정융자사업을 추진한 37개 기금별 융자 규모 추이는 <부록 표 1> 참고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재정융자 사업 수는 2007년 34개 기금, 173개 사업에서 2018년에는 26개 기금에서 95개 사업, 2019년에는 28개 기금에서 100개 사업을 추진

○ 2019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기금은 주택 관련 융자사업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규모가 18.5조원으로 가장 크고, 그 뒤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3.7조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조원의 순임

○ 2019년 기준으로 개별 기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주택구입·전세자금,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소상공인지원 등이 있음

표 2-3 2019년도 주요 기금별 현황 및 주요 사업(융자 규모 상위 10개 기금) (단위: 억원, %, 개)

	융자금(비중)	사업수	주요 융자 사업
주택도시기금	185,682 (56.3)	17	주택구입 · 전세자금,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공공임대 등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36,700 (11.1)	6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9,500 (5.9)	1	소상공인지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3,049 (4.0)	10	산지유통종합자금,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등
대외경제협력기금	11,412 (3.5)	6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
공무원연금기금	10,413 (3.2)	2	공무원연금대부, 대여학자금융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9,791 (3.0)	3	생활안정자금대여,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직원복지대부
농지관리기금	8,968 (2.7)	4	맞춤형농지지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4,920 (1.5)	1	관광산업 관련 융자 지원
축산발전기금	4,580 (1.4)	7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료산업종합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주: 1) 비중은 전체 융자금에서 개별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2) 2019년 기준 재정융자사업을 추진한 기금별 정보는 <부록 표 2> 참고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분야 · 부문 · 부처별 현황

1) 분야별 융자

■ **분야별 융자금 추이를 살펴보면 융자금 규모가 큰 사회·복지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융자금이 연평균 5.2%, 4.1%씩 증가**

- 사회·복지 분야의 융자금은 2007년에 전체 융자금의 52.8%인 12.9조원에서 2018년에는 22.7조원 규모로 커졌고 이는 전체 융자금의 65.2%를 차지하는 규모임
-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융자금의 20.3%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007년 4.6조원에서 2018년에는 7.1조원으로 규모가 증가
- 통일·외교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교육 분야의 융자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각각 0.8조원, 0.5조원, 0.2조원으로 그 규모는 작지만 연평균 약 6%씩 증가하고 있음
- 교육 분야의 경우, 2009년, 2015년, 2016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대규모 지방교육채 인수로 인하여 융자금이 급증하였음

■ **환경 분야, 국방 분야, 통신 분야의 융자는 각각 연평균 2.0%, 10.5%, 17.4%, 감소하고 있음**

- 2007년과 2018년도에 환경, 국방, 통신 분야의 융자 규모를 비교해보면, 2007년도에는 각각 1,821억원, 1,253억원, 2,875억원 규모였으나 2018년도에는 1,351억원, 369억원, 350억원으로 감소
- 일반·지방행정의 경우 2007년~2018년 기간동안 연평균 32.0%씩 융자규모가 감소하였으나, 대규모 국공채 인수가 있었던 2007년, 2009년, 2011년도에는 각각 2.2조원, 4.3조원, 2.3조원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기도 하였음
- 보건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과학기술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의 융자 지원 사업은 2007년에는 있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없음

그림 2-12 분야별 융자금 비중 변화(2007, 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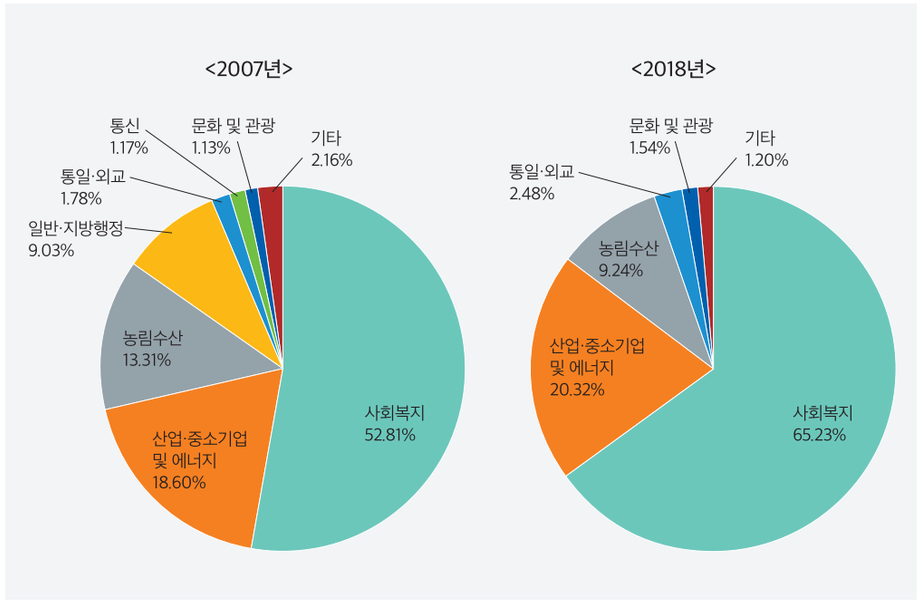

주: 1)결산 기준. 단, 2018년도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준
2)2007년 기타에는 환경, 국방, 교육, 교통및물류, 과학기술, 보건,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2018년 기타에는 교육, 환경, 국방, 통신,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포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분야별 사업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14개 분야 196개 사업, 2010년 12개 분야 145개, 2018년에는 10개 분야 109개 사업으로 감소 추세[16)]**

- 대부분 분야에서 사업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사업수가 많았던 사회·복지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감소
- 2019년 현재 기준으로 융자사업은 10개 분야에서 1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6) 정부 조직개편이 있던 년도의 경우 부처간 업무 이관 등의 이유로 동일사업이 중복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있어 세부사업 기준 융자사업 수의 년도별 추이는 제시하지 않았음

표 2-4 분야별 사업수 변화

(단위: 개, %)

	2007 (A)	2011	2015	2018	2019 (B)	증감률
사회복지	58 (29.6)	38 (27.3)	34 (25.8)	34 (31.2)	36 (31.6)	-37.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1 (15.8)	16 (11.5)	14 (10.6)	13 (11.9)	13 (11.4)	-58.1
농림수산	52 (26.5)	57 (41.0)	53 (40.2)	41 (37.6)	42 (36.8)	-19.2
통일·외교	4 (2.0)	4 (2.9)	13 (9.8)	9 (8.3)	9 (7.9)	125.0
문화및관광	17 (8.7)	6 (4.3)	3 (2.3)	2 (1.8)	3 (2.6)	-82.4
교육	2 (1.0)	3 (2.2)	5 (3.8)	2 (1.8)	3 (2.6)	50.0
환경	9 (4.6)	5 (3.6)	4 (3)	4 (3.7)	4 (3.5)	-55.6
국방	1 (0.5)	2 (1.4)	2 (1.5)	2 (1.8)	2 (1.8)	100.0
통신	6 (3.1)	2 (1.4)	1 (0.8)	1 (0.9)	1 (0.9)	-83.3
일반·지방행정	2 (1.0)	1 (0.7)	2 (1.5)	1 (0.9)	1 (0.9)	-50.0
보건	4 (2.0)	2 (1.4)	1 (0.8)			
교통및물류	8 (4.1)	3 (2.2)				
국토및지역개발	1 (0.5)					
과학기술	1 (0.5)					
총합계	**196 (100)**	**139 (100)**	**132 (100)**	**109 (100)**	**114 (100)**	**-41.8**

주: 증감률은 2007년 대비 2019년의 사업수 증감을 의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5 분야별 융자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회복지	129,365 (52.8)	125,305 (56.4)	153,437 (46.3)	142,445 (60.7)	165,319 (59.6)	191,541 (66.2)	175,240 (62.8)	189,965 (66.2)	187,784 (58)	184,719 (57.7)	215,703 (63.6)	226,600 (65.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5,550 (18.6)	45,983 (20.7)	70,759 (21.4)	43,315 (18.4)	44,666 (16.1)	45,325 (15.7)	50,172 (18)	47,130 (16.4)	62,619 (19.3)	70,049 (21.9)	74,177 (21.9)	70,592 (20.3)
농림수산	32,611 (13.3)	33,026 (14.9)	29,494 (8.9)	29,172 (12.4)	29,522 (10.6)	33,168 (11.5)	35,951 (12.9)	30,757 (10.7)	29,860 (9.2)	30,028 (9.4)	30,771 (9.1)	32,104 (9.2)
통일·외교	4,358 (1.8)	2,738 (1.2)	3,368 (1.0)	4,560 (1.9)	5,227 (1.9)	6,000 (2.1)	6,895 (2.5)	6,531 (2.3)	7,378 (2.3)	8,215 (2.6)	7,513 (2.2)	8,605 (2.5)
문화및관광	2,761 (1.1)	2,465 (1.1)	2,508 (0.8)	2,462 (1.0)	2,450 (0.9)	3,053 (1.1)	3,463 (1.2)	4,929 (1.7)	6,270 (1.9)	6,515 (2.0)	6,483 (1.9)	5,336 (1.5)
교육	999 (0.4)	1,645 (0.7)	23,018 (6.9)	2,284 (1.0)	2,216 (0.8)	1,741 (0.6)	2,214 (0.8)	2,948 (1.0)	20,883 (6.4)	16,524 (5.2)	1,792 (0.5)	2,084 (0.6)
환경	1,821 (0.7)	1,919 (0.9)	1,650 (0.5)	1,396 (0.6)	1,339 (0.5)	1,339 (0.5)	1,489 (0.5)	901 (0.3)	1,151 (0.4)	1,114 (0.3)	1,408 (0.4)	1,351 (0.4)
국방	1,253 (0.5)	1,231 (0.6)	1,382 (0.4)	1,576 (0.7)	1,574 (0.6)	1,601 (0.6)	1,690 (0.6)	1,786 (0.6)	1,261 (0.4)	1,380 (0.4)	747 (0.2)	369 (0.1)
통신	2,875 (1.2)	2,200 (1.0)	1,000 (0.3)	800 (0.3)	500 (0.2)	422 (0.1)	542 (0.2)	570 (0.2)	600 (0.2)	730 (0.2)	400 (0.1)	350 (0.1)
일반·지방행정	22,127 (9)	4,743 (2.1)	43,237 (13.1)	5,729 (2.4)	23,711 (8.5)	4,774 (1.7)	1,500 (0.5)	1,450 (0.5)	2,107 (0.7)	708 (0.2)	14 (0.0)	0 (0.0)

주: 1) 결산 기준, 단, 2018년도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준
2) ( )은 비중
3) 2) 2007년~2018년 기간 동안 재정융자사업을 추진한 모든 부문별 융자 규모 추이는 <부록 표 3> 참고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융자사업은 10개 분야, 28개 부문에서 114개 세부사업을 운영

-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 209.5조원(63.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2.3조원(18.9%), 농림수산 분야 34.2조원(10.4%) 순으로 융자금 규모가 큼
- 전체 융자금 중 90% 이상이 사회복지와 중소기업, 농림어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그림 2-13 재정융자사업 분야별 융자금 현황(2019년 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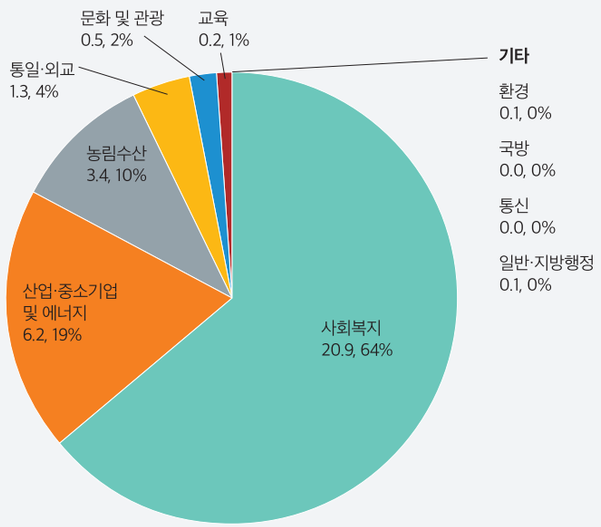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6 분야-부문별 재정융자사업 현황(2019년 본예산 기준) (단위: 억원, %)

분야	부문	융자금	비중	주요 융자 사업
사회복지	주택	185,682	56.3	주택구입 · 전세자금
	공적연금	20,593	6.2	생활안정자금대여 (사립학교연금기금)
	노동	2,133	0.6	산재예방시설융자
	고용	699	0.2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보훈	291	0.1	국가유공자대부
	취약계층지원	38	0.0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아동·보육	33	0.0	민간보육시설지원
	소계	209,469	63.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33,100	10.0	소상공인지원
	창업 및 벤처	23,100	7.0	창업기업자금
	에너지 및 자원개발	6,112	1.9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산업혁신지원	13	0.0	시설대체자금융자
	소계	62,325	18.9	
농림수산	농업·농촌	25,093	7.6	산지유통종합자금
	식품업	4,686	1.4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수산·어촌	3,664	1.1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임업·산촌	795	0.2	산림사업종합자금
	소계	34,238	10.4	
통일·외교	외교·통상	11,412	3.5	아시아차관
	통일	1,585	0.5	경협기반
	소계	12,997	3.9	
문화및관광	관광	4,920	1.5	관광산업 융자지원
	체육	310	0.1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문화예술	80	0.0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소계	5,310	1.6	
교육	고등교육	2,198	0.7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사학진흥기금)
환경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284	0.4	재활용산업육성융자
	해양환경	120	0.0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기후대기및환경안전	49	0.0	천연가스자동차보급 기타 민간융자금
	물환경	40	0.0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소계	1,493	0.5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1,000	0.3	지방채 인수
국방	전력유지	433	0.1	학자금대부
통신	정보통신	270	0.1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합계		**329,735**	**100**	

주: 주요 융자사업은 분야-부문에 속한 재정융자사업 중 융자금 규모가 가장 큰 세부사업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주요 분야의 부문별 융자

■ 융자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주택, 공적연금, 노동, 보훈 등 부문으로 구성되며, 이중 주택 분야의 융자 규모가 2007년 10조원에서 2018년 20.0조원으로 연평균 6.5%씩 증가

- 주택 부문 융자금은 2018년 기준으로 분야 내에서 88.2%, 전체 융자금 대비 57.5%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 주택부문, 공적연금, 노동 부문을 제외한 노동, 취약계층 등의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융자금은 1.0% 수준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주로 이루어짐

■ 전체 융자금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위주의 융자사업에서 산업진흥 및 고도화, 산업기술을 지원하는 융자사업 위주로 변화

-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은 2007년 0.4조원으로 분야 내 비중이 8.7%였으나, 2013년부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2.6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18년 기준으로 분야내 융자금의 62%인 4.4조원 규모임
- 반면, 산업금융지원 부문은 2007년 2.7조원에서 2018년 1.5조원으로 연평균 5.3% 감소
- 산업금융지원 부문에서 2009년 융자규모가 일시적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는데, 이는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었음

■ 융자금 규모 3.2조원으로 전체 융자금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는 농림수산 분야의 경우, 농업·농촌, 식품업, 수산·어촌, 임업·산촌 등의 분야로 구성

- 농업·농촌 부문은 2009년 이후부터 약 2조원 내외의 융자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지유통, 농가사료직거래, 맞춤형농지지원, 경영회생지원 등의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식품업 부문은 농식품의 대외 경쟁력 강화, 식품외식자금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 중이며, 2009년 3,792억원 규모에서 2018년 기준 4,671억원 규모로 증가

표 2-7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융자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택	100,418 (77.6)	95,028 (75.8)	120,621 (78.6)	110,906 (77.9)	134,090 (81.1)	158,515 (82.8)	140,940 (80.4)	159,137 (83.8)	156,178 (83.2)	156,401 (84.7)	186,385 (86.4)	199,821 (88.2)
공적연금	24,144 (18.7)	26,572 (21.2)	26,511 (17.3)	27,892 (19.6)	27,847 (16.8)	29,719 (15.5)	30,781 (17.6)	27,863 (14.7)	27,330 (14.6)	24,445 (13.2)	24,910 (11.5)	23,068 (10.2)
노동	3,222 (2.5)	3,260 (2.6)	5,740 (3.7)	3,030 (2.1)	2,773 (1.7)	2,635 (1.4)	2,899 (1.7)	2,421 (1.3)	3,756 (2)	3,489 (1.9)	4,023 (1.9)	3,368 (1.5)
보훈	1,294 (1.0)	228 (0.2)	296 (0.2)	277 (0.2)	288 (0.2)	281 (0.1)	310 (0.2)	321 (0.2)	324 (0.2)	290 (0.2)	290 (0.1)	291 (0.1)
보육·가족 및 여성	21 (0.0)	20 (0.0)	30 (0.0)	40 (0.0)	120 (0.1)	190 (0.1)	136 (0.1)	75 (0.0)	57 (0.0)	37 (0.0)	57 (0.0)	36 (0.0)
취약계층 지원	160 (0.1)	120 (0.1)	160 (0.1)	228 (0.2)	129 (0.1)	140 (0.1)	123 (0.1)	110 (0.1)	101 (0.1)	58 (0.0)	38 (0.0)	16 (0.0)
기초 생활보장	72 (0.1)	72 (0.1)	72 (0)	72 (0.1)	72 (0.0)	61 (0.0)	51 (0.0)	38 (0.0)	38 (0.0)			
노인·청소년	35 (0.0)	5 (0.0)	8 (0.0)									

주: 결산 기준. 단, 2018년도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부문별 융자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산업진흥·고도화	3,977 (8.7)	3,192 (6.9)	11,246 (15.9)	3,028 (7)	4,475 (10)	5,074 (11.2)	26,367 (52.6)	25,421 (53.9)	32,083 (51.2)	37,620 (53.7)	45,517 (61.4)	43,840 (62.1)
산업금융지원	27,308 (60)	27,463 (59.7)	44,675 (63.1)	28,775 (66.4)	26,494 (59.3)	28,100 (62)	14,200 (28.3)	11,450 (24.3)	18,270 (29.2)	21,550 (30.8)	17,550 (23.7)	15,000 (21.2)
산업기술지원	1,000 (2.2)	1,200 (2.6)	2,880 (4.1)	1,580 (3.6)	2,580 (5.8)	3,080 (6.8)	3,300 (6.6)	3,500 (7.4)	3,500 (5.6)	3,500 (5.0)	5,750 (7.8)	5,900 (8.4)
에너지 및 자원개발	13,265 (29.1)	14,127 (30.7)	11,958 (16.9)	9,932 (22.9)	11,116 (24.9)	9,071 (20)	6,305 (12.6)	6,759 (14.3)	8,767 (14)	7,379 (10.5)	5,361 (7.2)	5,852 (8.3)

주: 결산 기준. 단, 2018년도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9 농림수산 분야의 부문별 융자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농업·농촌	26,773 (82.1)	27,318 (82.7)	20,021 (67.9)	19,817 (67.9)	19,811 (67.1)	22,168 (66.8)	25,384 (70.6)	22,722 (73.9)	23,110 (77.4)	21,573 (71.8)	21,978 (71.4)	22,765 (70.9)
식품업			3,792 (12.9)	3,917 (13.4)	4,389 (14.9)	5,571 (16.8)	5,242 (14.6)	3,839 (12.5)	2,793 (9.4)	3,647 (12.1)	3,854 (12.5)	4,671 (14.5)
수산·어촌	5,571 (17.1)	5,433 (16.5)	5,337 (18.1)	5,101 (17.5)	5,013 (17)	5,170 (15.6)	5,125 (14.3)	3,972 (12.9)	3,723 (12.5)	4,119 (13.7)	4,110 (13.4)	3,774 (11.8)
임업·산촌	267 (0.8)	275 (0.8)	344 (1.2)	338 (1.2)	309 (1.0)	259 (0.8)	200 (0.6)	224 (0.7)	234 (0.8)	688 (2.3)	828 (2.7)	893 (2.8)

주: 결산 기준. 단, 2018년도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부처별 융자

■ **부처별 재정융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순으로 규모가 크고, 이 3개 부처에서 전체 융자금의 80%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재정융자 중 규모가 가장 큰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을 소관함에 따라 융자 규모가 큼

■ **부처별 융자금 규모 또한 경제·사회 및 국내외 여건 등에 따라 년도별 변화가 큼**

-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국공채, 지방채 및 지방교육채 인수 등의 융자금의 규모에 따라 년도별 융자 규모 변화가 컸음
- 통일부의 경우 남북경협 등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2008년 이후 융자금 지출이 감소

표 2-10 부처별 융자금 현황 (단위: 억원, %)

부처명	2014	2015	2016	2017	2018
국토교통부	159,137 (55.5)	156,178 (48.2)	156,401 (48.9)	186,385 (55)	199,821 (57.5)
중소벤처기업부	40,355 (14.1)	53,829 (16.6)	62,650 (19.6)	68,800 (20.3)	64,725 (18.6)
농림축산식품부	26,561 (9.3)	25,903 (8)	25,220 (7.9)	25,833 (7.6)	27,437 (7.9)
해양수산부	3,972 (1.4)	3,723 (1.1)	4,119 (1.3)	4,110 (1.2)	3,774 (1.1)
인사혁신처	12,981 (4.5)	12,533 (3.9)	11,350 (3.5)	12,732 (3.8)	12,484 (3.6)
교육부	17,267 (6)	16,947 (5.2)	15,133 (4.7)	13,627 (4)	12,344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70 (0.2)	600 (0.2)	730 (0.2)	400 (0.1)	350 (0.1)
기획재정부	8,268 (2.9)	28,037 (8.7)	22,400 (7)	7,596 (2.2)	8,631 (2.5)
산업통상자원부	6,774 (2.4)	8,791 (2.7)	7,399 (2.3)	5,378 (1.6)	5,867 (1.7)
문화체육관광부	4,929 (1.7)	6,270 (1.9)	6,515 (2)	6,483 (1.9)	5,336 (1.5)
고용노동부	2,421 (0.8)	3,756 (1.2)	3,489 (1.1)	4,023 (1.2)	3,368 (1.0)
환경부	901 (0.3)	1,151 (0.4)	1,114 (0.3)	1,408 (0.4)	1,351 (0.4)
산림청	224 (0.1)	234 (0.1)	688 (0.2)	828 (0.2)	893 (0.3)
국방부	1,786 (0.6)	1,261 (0.4)	1,380 (0.4)	747 (0.2)	369 (0.1)
보건복지부	276 (0.1)	4,341 (1.3)	342 (0.1)	342 (0.1)	323 (0.1)
국가보훈처	321 (0.1)	324 (0.1)	290 (0.1)	290 (0.1)	291 (0.1)
통일부	223 (0.1)	36 (0.0)	760 (0.2)	27 (0)	26 (0)
전체	**286,967 (100)**	**323,913 (100)**	**319,980 (100)**	**339,009 (100)**	**347,390 (100)**

주: 1) 결산 기준. 단, 2018년도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준
2)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처명이 다른 해의 경우 최근 기준으로 수정하여 시계열을 유지함
3) 2007년~2018년 기간 동안 재정융자사업을 추진한 부처별 융자 규모 추이는 <부록 표 4> 참고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장

주요 재정융자사업 소개

1. 주택구입·전세자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2. 전세임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3. 다가구매입임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4.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5. 가로주택정비사업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6. 창업기업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7. 소상공인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8. 신성장기반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9. 재도약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10. 투융자복합금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11. 산지유통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2. 맞춤형농지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기금)
13.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4. 식품외식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5. 도매유통활성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6.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7.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8. 인삼특용작물계열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9.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1.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개요

목적	• 주택 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 자금의 원활한 지원 및 저소득 서민에 대한 전·월세 자금 지원으로 자금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	
규모	2017 결산: 127,056 / 2018 결산: 88,095 / 2019 본예산: 78,442	
기간	• (구입자금) 1994~현재, (전세자금) 1990~현재	
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직접시행	
수혜자	•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서민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라목	
주요 사업 경과	주택구입	• 1994: 무주택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주택 구입자금'신설 • 2000: 무주택 서민(근로자 이외)을 위해 '서민주택 구입자금'신설 • 2001: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신설 • 2014: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출시 • 2018: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출시
	전·월세자금	• 1990: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세민가구 전세자금'신설 • 1994: 무주택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신설 • 2000: 무주택 서민(근로자 이외)을 위해 '서민주택 전세자금'신설 • 2015: '근로자·서민전세'와 '저소득전세'대출을 통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출시, '주거안정월세대출'출시 • 2018: '신혼부부 전용 주택전세자금대출'출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출시 • 2018: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실시

사업 정보 ❶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지원 내용/조건: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 금리: 최저 연1.7%부터~

연소득(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 2 천만원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2.00%
2 천만원 초과 ~ 4 천만원 이하	연 2.10%	연 2.20%	연 2.30%	연 2.40%
4 천만원 초과 ~ 7 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5%

- 대출 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 한도: 최대 2.4억원(DTI 60%, LTV 70% 이내)
- 신청 방법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신청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사업 정보 ❷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지원 대상: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자
- 지원 내용/조건: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 금리: 연 2.00~3.15%(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연소득(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 2 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30%
2 천만원 초과 ~ 4 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5%
4 천만원 초과 ~ 6 천만원 이하	연 2.85%	연 2.95%	연 3.05%	연 3.15%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 한도: 최고 2.0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4억원 이내)
- 신청 방법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단 및 대출금액 신청 —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사업 정보 ❸ 버팀목대출 (전세자금)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지원 내용/조건: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대출 금리: 연 2.3%~2.9%(변동금리)

연소득(부부합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 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2 천만원 초과 ~ 4 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4 천만원 초과 ~ 6 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 대출 기간 : 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 대출 한도: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최대 1.2억원)
- 신청 방법
  - 신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단 및 대출금액 신청 —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2.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세임대

사업개요

목적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등
규모	2017 결산: 44,575 / 2018 결산: 29,073 / 2019 본예산: 29,073
시행년도	• 2005~현재
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수혜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 (2순위) 도시근로자 전국평균 소득 50% 이하, 장애인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라목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및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주요 사업 경과	• 2004: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입·시행 • 2005: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 기존주택 전세 임대 제도 도입 • 2010: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2010년~2012년까지 연 2만호 수준으로 공급) • 2012: '12년 주택종합계획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 2만호 공급 • 2013: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 4만호 공급) • 2015: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으로 2016년 전세임대주택 물량확대 공급(고령층 신설 2천호, 대학생 확대 2천호) (2016년 2.7만호 → 3.1만호) • 2016: 전세임대 1만호 확대(3.1만 → 4.1만호) 및 지원단가 호당 500만원 상향 발표 • 2017: 전세임대 7천호 확대 공급(2.7만 → 3.4만호)

사업 정보

- 지원 대상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 2순위: 도시근로자 전국평균 소득 50% 이하, 장애인
- 전세금 지원 내용/조건
  -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임대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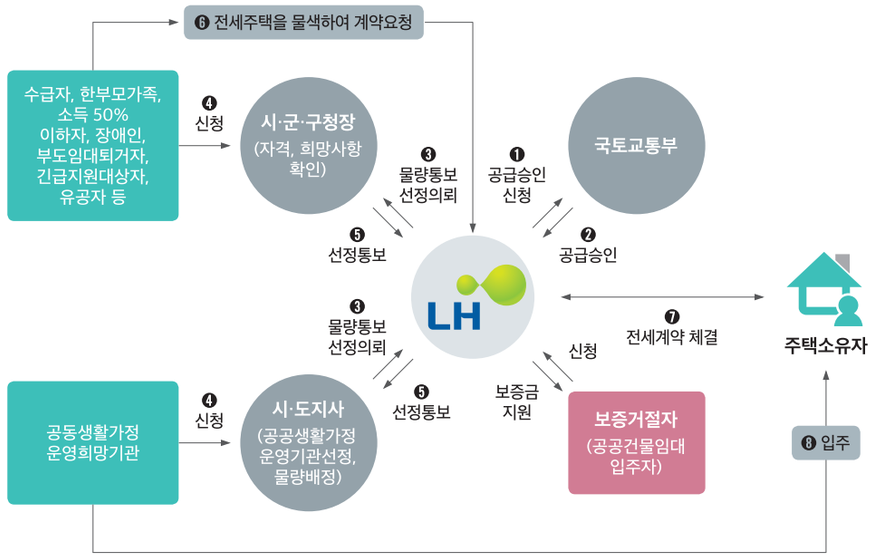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3. 다가구매입임대

사업개요

목적	•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 등
규모	2017 결산: 7,100 / 2018 결산: 9,759 / 2019 본예산: 15,930
기간	• 2004~현재
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쪽방 거주자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 및 주거취약 계층
법령상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43조
주요 사업 경과	• 2004: 저소득 서민층 주거복지 확대방안 발표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 • 2005: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으로, 다가구주택 등 매입·공급을 10,000호 → 50,000호로 확대 발표(연간 4,500호, 2015년까지 총 50,000호) • 2008: 주택종합계획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로 2008~2012년까지 매년 7,000호씩 공급 • 2012: 주택종합계획으로 보금자리 주택 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 주택 연 2만호 공급 • 2013: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으로 20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 • 2014: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2015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2015년 5만호 공급) • 2015: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으로 2016년 리모델링 매입임대 2천호(기존물량전환 1천호, 순증 1천호) 공급

사업 정보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쪽방 거주자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 및 주거취약 계층
- 임대 조건
  -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
- 임대 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 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20년 동안 거주 가능
- 신청 방법

1 신청 (입주자) → 2 물량통보, 선정의뢰 (지방자치단체) → 3 매입승인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 4 매입승인 (국토교통부) → 5 지방자치단체에 선정통보 (한국토지주택공사) → 6 주택소유자와 매매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 → 7 입주자와 임대차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4.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사업개요

목적	• 도시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을 위한 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규모	2017 결산: - / 2018 결산: 3,258 / 2019 본예산: 2,500
기간	• 2018~현재
시행주체	• 주택소유자
수혜자	• 주택소유자, 대학생·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마목
주요 사업 경과	• 2019: 공공지원임대 5,000가구 공급(공공지원임대 1,000가구(건설개량형), 공공지원임대 1,000가구(매입형), 공공지원임대 3,000가구(융자형))

사업 정보

- 사업 내용: 집주인은 기존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거나 수선하여 다가구 등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 지원과 LH가 임대운영 및 관리를 해주는 사업
- 대출 대상: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
- 대출 대상 주택: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 주택으로,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 금리: 연 1.5%(변동금리)
- 대출 기간: 8년, 12년
- 대출 한도: 가구(세대)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 임대 대상: 무주택자로 주거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세의 50%로 공급
  - 1순위: 대학생, 노인
  - 2순위: 대학생, 취업준비생
- 임대기간
  - 자율건축·표준건축 방식 : 8년, 10년, 12년, 16년, 20년 중 택일
  - 경수선 방식 : 8년,12년 중 선택, 주택연한(30년) 내 연장가능
- 임대 조건
  - 월 임대료 : 시세의 시세 90% 이하 또는 50%(주거급여수급자)
    * 단, 공실이 없는 지역에 한해 최대 90%까지 가능
  - 임대보증금 : 임대가구 평균 전용면적(20㎡) 기준
    (평균 전용면적 20㎡ 이하) 월 임대료의 12배 (최하 6배)
    (평균 전용면적 20㎡ 초과) 실질임료 기준 산정

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개요

목적	•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면적 1만㎡ 미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서 지자체·주민 주도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단기간에 걸친 도시재생효과의 가시화가 가능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노후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소외되던 지역의 주택 개량이 가능
규모	2017 결산: 80 / 2018 결산: 675 / 2019 본예산: 1,500
기간	• 2017~현재
시행주체	• 조합·공공기관 등
수혜자	• 저층 노후주거지역 거주 주민 등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요 사업 경과	• 2017: 가로주택정비사업 추경 예산 반영(60억원)

사업 정보

- 지원 대상: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등(단독 10호, 공동주택 20호 이상)
- 지원 내용/조건

	내용
초기사업비	-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
본사업비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초기사업비 상환 자금, 공사비, 이주비, 금융비용 등)

- 대출 금리: 연 1.5% (변동금리)
- 대출 기간: 최장 5년

	내용
초기사업비	-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해당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본사업비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이주비를 제외한 융자금액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 한도

	내용
초기사업비	- 총사업비의 5%(15억원 한도)
본사업비	-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연면적의 20%이상) 총사업비의 70% 그 외에는 총사업비의 50%

- 신청 방법

1 융자신청 — 융자신청 서류 제출
2 예비심사 — 예비심사 통과시 예비승인
3 융자심사 —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검토
4 심사발표 — 융자 승인 및 통지 혹은 융자거절
5 융자약정 — 융자약정서 작성
6 담보취득 —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7 융자실행 — 융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6. 창업기업자금

사업개요

목적	•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신속·우선·집중 지원,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을 통한 고용창출 도모
규모	2017 결산: 20,500 / 2018 결산: 20,460 / 2019 본예산: 20,800
기간	• 1998~현재
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혜자	• 중소기업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74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주요 사업 경과	• 1998: 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 • 2010: 재창업자금(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지원) 신규 지원 • 2012: 청년전용창업자금(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 신규 지원 • 2019: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사업 정보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 중인 자
- 지원 내용/조건

	내용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드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드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 정성평가 등에 드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드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매비,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운전자금	- 창업 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드는 자금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3%p
- 대출 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 한도: 잔액 기준 45억 원 이내(지방 소재 50억 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민간투자연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 기업당 1억원 이내
- 신청 방법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7. 소상공인지원

사업개요

목적	•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유지 및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도모
규모	2017 결산: 22,450 / 2018 결산: 20,575 / 2019 본예산: 19,500
기간	• 1999~현재
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혜자	• 소상공인
법령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1조
주요 사업 경과	• 1999: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수립 및 경제차관간담회에서 지원계획 확정 • 2000: 업체당 지원한도 5천만원으로 확대(기존 3천만원) • 2012: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영위 소공인 지원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시행 • 2016: 장수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촉진자금(2,000억원) 신설 • 2017: 수출 및 고용창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고용특별자금(500억원) 신설

사업 정보

- 지원 대상
  - 사업 개시일이 융자신청일 이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의 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제조, 건설, 운송, 광업 10인 미만, 장애인 기업은 업종 무관 10인 이상도 지원
  -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대출 금리: 정책 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 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성공불융자는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 한도
  - 장애인,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전국 6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

1 신청 · 접수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평가 — 신용보증서 발금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 보증기관

3 대출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은행

8. 신성장기반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사업개요

목적	• 경영·기술혁신 유망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혁신성장 동력 창출
규모	2017 결산: 12,300 / 2018 결산: 10,800 / 2019 본예산: 8,800
기간	• 1979~현재
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혜자	• 중소기업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74조
주요 사업 경과	• 1979: 일본 구조고도화사업을 도입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협동화 사업 시작 • 1993: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추진 • 2008: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경영혁신자금 및 기업간협력자금, 산업기반자금을 신성장기반지원으로 통합 • 2010: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을 신성장기반지원으로 통합 • 2014: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신규 지원 • 2019: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폐지

사업 정보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5)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 지원 내용/조건

	내용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대출 기간

	내용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 한도: 잔액기준 45억원 이내(지방 소재 50억원), 운전 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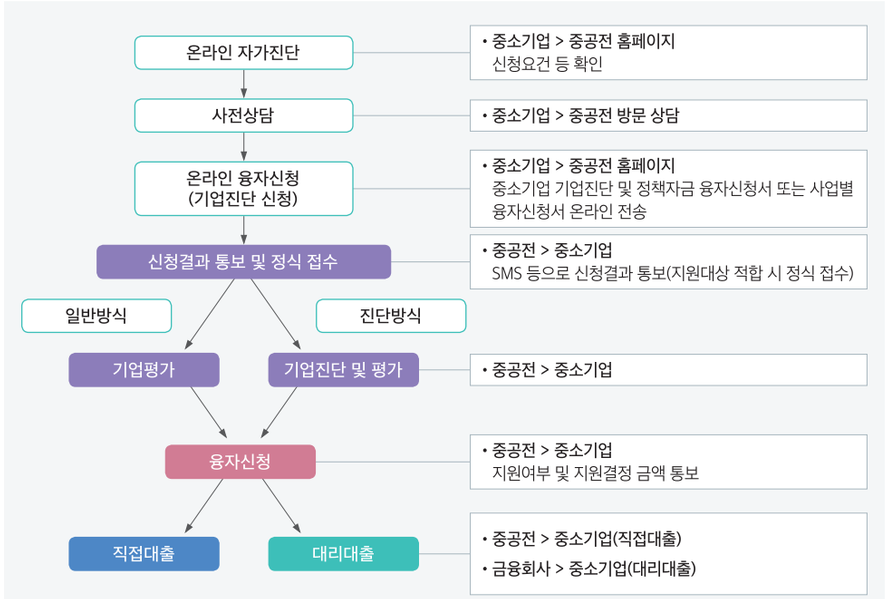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기업마당(www.bizinfo.go.kr)

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재도약지원자금

사업개요

목적	• 기업 순환주기 후단 기업군에 대한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규모	2017 결산: 2,550 / 2018 결산: 2,790 / 2019 본예산: 2,300
기간	• 2007~현재
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혜자	• 중소기업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74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주요 사업 경과	• 200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06: 사업전환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으로 중진공 지정 • 2006: 법 시행 및 사업전환지원사업 개시 • 2007: 법 시행 및 무역조정지원사업 개시 • 2013: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 2016: 신용회복위원회, 신·기보 협약 체결을 통한 신용미회복자 대상 협업 방식재창업자금 지원 실시 • 20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한 재창업자 정의 및 지원 강화

사업 정보 ❶ 사업전환

- 지원 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으로, ①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②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지원 내용/조건: 기업당 45억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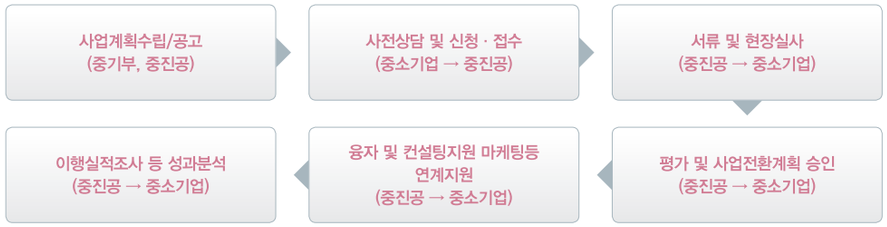

사업 정보 ❷ 구조개선전용

- 지원 대상
  - 건강관리시스템의 경영개선, 구조개선 진단을 받은 경영정상화 추진 기업
  -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 지원 내용/조건: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 방법

* 사전상담 시 신청요건 확인 필수(은행권추천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지정 경영애로기업, 워크아웃 추진기업, 회생절차 인가기업,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판정기업 등)

사업 정보 ❸ 재창업자금

- 지원 대상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지원 내용/조건: 기업당 45억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9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신청 방법

1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투융자복합금융

사업개요

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규모	2017 결산: 1,500 / 2018 결산: 1,700 / 2019 본예산: 2,000
기간	• 2012년~현재
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혜자	• 중소기업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주요 사업 경과	• 2008: 성장공유 방식의 투융자복합금융 시범사업 개시 • 2011: 이익공유 방식의 투융자복합금융 시범사업 개시 • 2012: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형대출과 성장공유형대출)으로 본격 실시

사업 정보 ❶ 이익공유형 대출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지원 내용/조건: 기업당 연간 20억 원(운전 연간 5억 원)
- 대출 금리: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고정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한 신용대출금리-2.2%p
  - 이익연동이자 :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3%
- 대출 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 방법

1 자금신청	2 기업평가	3 지원결정	4 약정체결 및 자금지원	5 원리금 상환	6 결산 재무제표 신고 및 이자 결정납부
지역본(지)부	현장실사			원금 + 고정이자	성과배분 이자 결정납부

사업 정보 ❷ 성장공유형 대출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지원 내용/조건: 기업당 한도 45억 원(운전 연간 10억 원)
- 대출 금리: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 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신청 방법

1 자금신청	2 사업타당성 평가 및 회계실사	3 전환 조건 협상	4 심의위원회	5 계약체결 및 자금지원	6 주식전환 / 분할상환
지역본(지)부	현장실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1. 산지유통종합자금

사업개요

목적	• (산지유통 활성화) 산지조직에게 원물 확보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산물 판로를 확충하는 한편, 산지조직을 조직화·규모화·전문화된 산지유통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산지의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 • (수급안정) 과일 및 채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물가안정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	
규모	2017 결산: 5,457 / 2018 결산: 5,752 / 2019 본예산: 5,628	
기간	• 2000년~현재	
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수혜자	• 광의: 농협,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유통법인 등 • 협의: 소비자	
법령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주요 사업 경과	산지 유통 활성화	• 2000: 중기(3년) 저리(3%)의 원료확보자금 등 유통종합자금 지원 • 2003: 기존 공동규격출하촉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을 산지일반조직지원으로 통합 지원 • 2005: 지역농협, 영농조합단위의 소규모사업에서 벗어나 규모화·전문화된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추진
	수급 안정	• 1995: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급안정사업 도입 • 2015: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 수급조절 기능(면적조절 등) 강화, 지원조직의 판매능력 확보 등 계약재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개편 추진

사업 정보

○ 지원 대상: 농식품 수출사업자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출자자본금	운영실적	농업인 조합원	비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	3억원 이상	3년 이상	20명 이상	농업회사법인(협동조합)은 농업인 주주 지분(조합원 수) 50% 초과
참여조직	1억원 이상	1년 이상	6명 이상	

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구분	취급액	조직화 취급액	조직화 취급률	비고
지역 연합조직	6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30%이상	통합마케팅 협약 체결한 참여조직 1개 이상
품목 광역조직	100억원 이상	70억원 이상	30%이상	3개시·군·구 또는 2개시·도 이상에서 원물확보

② 참여조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실적 중 조직화 취급액 2억원 이상

○ 지원 내용/조건
- 원물확보자금 (계약금,중도금,잔금), 선지급금(운전자금) 자가생산을 위한 영농자금, 수급대상 품목 계약재배 매취 자금 지원
- 사업 의무: 대출액의 125% 이상 취급

○ 대출 금리: 고정금리 0 ~ 2.5%

○ 대출 기간: 3년 일시상환

○ 대출 한도: 연간 600억원 이내 (최소한도 : 5억원, 배정단위 1억원)

○ 신청 방법

1 사업공고 (aT홈페이지, 1월초) → 2 사업신청 (AgriX시스템, 1.17까지) → 3 평가실적 입력 (AgriX시스템, 2.13까지) → 4 현장실사 (2월말~3월초) → 5 사업대상 조직 선정 (3월말) → 6 자금대출 실행 (4월~ ※담보대출)

12. 맞춤형농지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기금)

사업개요

목적	•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단계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규모	2017 결산: 3,066 / 2018 결산: 3,467 / 2019 본예산: 4,649	
기간	• (매매용·임대용) 1990~현재 • (공공농지임대용) 2010~현재	
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수혜자	•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법령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주요 사업 경과	농지규모화	• 1990: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을 설치, 농지규모화사업 실시 • 1994: 「농어촌발전대책」 쌀 전업농 10만호 육성 방침 발표 • 2004: 「쌀전업농육성 종합대책」 발표 • 2004: 쌀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산업 발전대책 수립 발표
	농지매입비축	• 200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매입비축사업 시행근거 마련) • 200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2009: 농지은행사업으로 통합(「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시행) • 2010: 농지매입비축 신규사업 시행

사업 정보 ❶ 공공임대용농지매입

- 매입농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논·밭·과수원)
- 매입대상자: 이농·전업 또는 고령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 매입가격 : 감정평가액
  ※ 매입농지는 보유하면서 전업농, 창업농 등에 장기 임대
- 임대대상자 : 전업농, 2030세대, 창업농, 귀농자, 농업법인, 일반 농업인, 기타 영농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등
- 임대 상한 : 제한 없음. 다만,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만 64세 이하의 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 기준 5ha 이내
-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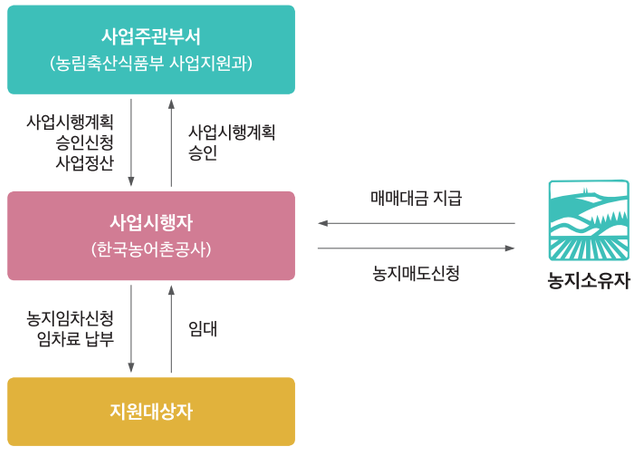

사업 정보 ❷ 농지매매, 임차임대, 교환분합

- 농지매매(비농가, 전업·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농지를 매도)
  - 매입농지: 진흥 지역안의 논, 밭 또는 경지정리된 논, 밭
  - 매도대상자: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업경영인·2030세대·귀농인 등),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조건: 연리 1%, 11-30년 균분 상환
- 임차임대(전업·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 임대(5~10년))
  - 임차농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논·밭
  - 임대 대상자: 매도대상자와 같음
  - 지원 조건: 무이자, 5-10년 균분 상환
- 교환분합(교환분합 차액, 경지정리 집단환지시 청산금 지원)
  - 지원 조건 : 연리 1%, 10년 균분 상환
-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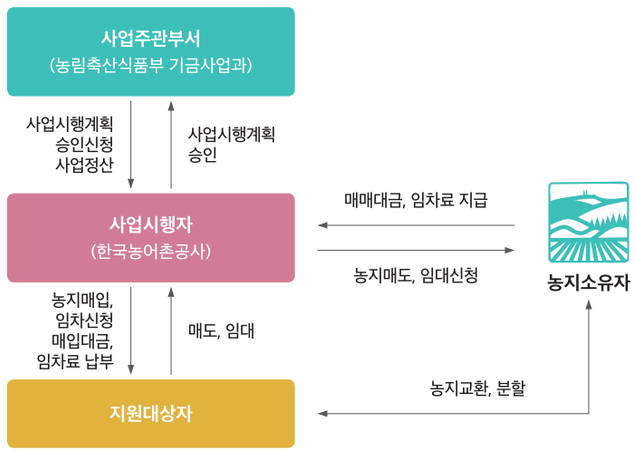

13.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사업개요

목적	• 농식품 수출업체에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의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진 도모
규모	2017 결산: - / 2018 결산: 3,275 / 2019 본예산: 3,386
기간	• 2017~현재
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혜자	• 농식품 수출업체
법령상 근거	•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주요 사업 경과	• 1980: 국내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출용 원료구매 자금 지원 • 2008: 농식품 수출자금(원료구매자금,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자금 등)을 운영활성화자금으로 통합지원 • 2015: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 및 가공식품 수출 지원 사업으로 재편 • 2017: 융자사업만 분류하여 농식품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재편 • 2018: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사업으로 명칭 변경 • 2019 현재 농식품 수출업체 240개 지원

사업 정보 ❶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 지원 대상: 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로,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 지원 내용/조건
  -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소요 자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은 대출액의 50%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00% 수출
  - 기타가공식품(비제조)수출업체 70%이상 수출, 기타가공식품(제조)수출업체 30%이상 국내산 농산물 수매
- 대출 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 기간: 1년
- 대출 한도: 업체당 200억원 이내
- 신청 방법

1	2	3	4	5
지원안내 신문 공고	지원신청서 제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대출실행	수시배정 및 수시대출
1월	1월 말	2월	연중 ※ 담보대출	연중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사업 정보 ❷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 지원 대상: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생산자단체, 농업인 포함)
  -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LC 또는 수출계약서 입증)이 150천$ 이상이면서 부지를 확보한 업체
- 지원 내용/조건
  - 농식품 수출업체의 시설 자금 지원 (부지매입비 제외)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 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농업인,생산자단체 등) 연 2.0%,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 기간: 10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매반기말 이자)
- 대출 한도: 업체당 20억원
- 신청 방법

1	2	3	4
지원안내 신문 공고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담보대출	사후관리
1월	수시	기성고에 의거 지급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4.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개요

목적	• 식품제조·가공·신선편이·전통발효 제조·가공·수출 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식재료 가공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우수 외식프렌차이즈 육성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 • 국내산 농산물 유통 및 가공원료 매입지원을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 가격안정화, 농가 판로 확보 및 식품산업과의 연계강화
규모	2017 결산: 933 / 2018 결산: 1,312 / 2019 본예산: 1,300
기간	• 2011년~현재
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수혜자	• 농식품제조업체 및 외식·전처리업체
법령상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제13조, 제17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8조 • 「외식산업진흥법」 제13조, 제16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4조, 제5조 • 「김치산업 진흥법」 제4조, 제6조
주요 사업 경과	• 1996: 기존 단기 운영자금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 • 2006: 식품안전 인증시설 자금지원 및 생산자단체 중심의 소비지 유통 활성화 방안 추진 • 2008: 신선편이 업체 등에 가공시설의 현대화 지원 • 2011: 「외식산업진흥법」 제정(외식산업의 유통활성화 지원 및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외식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 • 2011: 자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1년 품목별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는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신설(10년까지는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지원, 생산자 참여형 육성지원 사업 등 개별적으로 운영)

사업 정보 ❶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지원 대상: 국내산 농산물 제조·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단, 지역농협,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등 유사사업자금 이용업체는 지원 제외)
- 지원 내용/조건
  - 국내산 원료 농산물 매입 및 원료의 저장·가공·운송비
    * 농산물 :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농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 대출액의 125%이상 운용(대출상환 후 1개월 이내 국내산 농산물 구매실적 등 사업실적 제출)
- 대출 금리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연 2.5%,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단, 지원업체 평가결과 1%p 금리우대)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 기간: 1년(전통주류 2년)
- 대출 한도: 50억원 이내(총사업액의 80% 이내)
- 신청 방법

1 지원안내 신문 공고 (1월) → 2 지원신청서 제출 (1월 말) →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3월) → 4 대출실행 (3월말 이후 ※ 담보대출) → 5 정산 (대출상환 후 1개월 이내)

사업 정보 ❷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자금

- 지원 대상: 농식품부, 중기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참가 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취급업체
- 지원 내용/조건

	지원 내용	사업의무
시설자금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 등 시설소요 자금	기성고 확인
운영자금	원료구매·저장·가공·운송·부자재구입비 등	대출액의 125%이상 운용

- 대출 금리: 일반업체 3%, 농업경영체 2.5%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이내(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이내
- 대출 한도: 업체당 40억원 이내(운영자금만 신청시 20억원)
- 신청 방법

1 지원안내 신문 공고 — 1월

2 지원신청 및 자금배정 — 지원신청(1~3월), 자금배정(4월) ※예산미소진시 수시접수

3 대출 — 운영자금: 지원희망시기 / 시설자금: 기성고에 의거 지급

4 정산

사업 정보 ❸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 지원 대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농업인 소규모창업 식품·가공업체

	내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HACCP, GMP, ISO22000 등 공인된 식품안전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농식품 인증을 받은 업체 또는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이 상인 업체
농업인 소규모창업 식품·가공업체	- 사업자등록 및 운영이 1년 미만인, 1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소기업 중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

- 지원 내용/조건

	지원 내용	사업의무
시설자금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부지매입비 제외)	기성금액이 대출액의 125% 이상, 인증획득 추진업체는 최종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증획득
운영자금	제품생산 관련 원부자재 매입 및 저장·가공·운송 등 소요비용	대출액의 125% 이상 운용

- 대출 금리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연 2.0%(운영자금 연 2.5%),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2년(만기 일시상환)
- 대출 한도: 시설은 50억원, 운영은 2억원
- 신청 방법

1 지원안내 신문 공고 — 1월

2 지원신청서 제출 — 4월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 5월

4 대출 — 시설: 기성고에 의거 지급 / 운영: 지원희망시기

5 사후관리 — 시설: 기성고확인, 인증취득 / 운영: 사업실적제출

사업 정보 ④ 외식업체육성자금

- 지원 대상: 외식업체(개인 및 법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 지원 내용/조건

	지원 내용	사업의무
시설자금	외식업체 개설 및 개보수와 관련된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비, 주방시설·설비비, 비품집기 구입비 등	시설 기성금액이 대출액의 125% 이상, 인증획득 추진업체는 최종대출일로부터 2년이내에 인증획득
운영자금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구매비	대출액의 125%이상 운용

- 대출 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시설자금 연 2.0%)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업력 5년미만, 경영자연령 만 40세미만인 청년외식업체에 1% 금리우대)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 기간: (운영) 1년, (시설)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 한도: (운영) 5억, (시설) 1억
- 신청 방법

1 지원안내 신문 공고 (1월) → 2 지원신청서 제출 (4월) →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5월) → 4 대출실행 (5월 이후) → 5 사후관리 (대출상환 후 1개월 이내)

15.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도매유통활성화지원

사업개요

목적	• 도매시장 관계자 등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및 수매·매취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유도
규모	2017 결산: 933 / 2018 결산: 826 / 2019 본예산: 969
기간	• 1998~현재
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수혜자	• 생산자, 소비자, 도매시장 종사자(법인, 중도매인 등), 농산물 유통인 등
법령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주요 사업 경과	• 1990: 도매시장 등에 농산물을 출하한 생산자가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 출하촉진자금 지원 • 2008: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사이버 거래소 설치 • 2008: 유통·외식·식품업체, 산지유통조직, 정부 공동으로 소비지·산지 상생협력 선포식을 개최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및 공정거래 지원센터'설치

사업 정보 ❶ 농산물도매시장자금

○ 지원 대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

	자격 요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중도매(법)인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 지원 내용/조건

–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되는 국내산 농산물의 대금결제, 국내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한 대금 결제 등 지원

	사업 의무
출하촉진(선도금)	- 대출액의 375% 이상 선도금 운용실적
촐하촉진(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대출액의 연간 12배 이상 상장거래 - 시장도매인: 대출액의 연간 6배 이상 거래 - 중도매(법)인: 대출액의 연간 12배 이상 거래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 중도매(법)인: 연간 대출액의 1.5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 대출 금리: 사업에 따라 1.5~3% 고정금리

– 출하촉진(선도금) : 1.5%(고정금리)

– 출하촉진(결제자금) : 3%(고정금리)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1.5%(고정금리)

○ 대출 기간 : 1년 이내

○ 대출 한도

– 출하촉진(결제자금) : 중도매(법)인 전년도 실적 범위 내 최대 5억원까지 신청가능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업체당 50억원(도매시장법인), 업체당 10억원(중도매(법)인)

○ 신청 방법

1 지원안내 신문 공고 (2~3월) → 2 자금신청 접수 →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4월) → 4 대출실행 (연중 ※ 담보대출) → 5 수시 배정 및 수시 대출 (연중)

사업 정보 ❷ 수산물도매시장자금

- 지원 대상: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연속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지원 내용/조건
  -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된 수산물의 대금결제, 정가·수의 거래물량에 대한 대금결제

	사업 의무
출하촉진 (결제자금)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의 연간 12배 이상 상장거래 시장도매인 : 대출액의 연간 6배 이상 거래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도매시장법인 :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 대출 금리
  - 어대금(결제자금) : 3%(고정금리)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1.5%(고정금리)
- 대출 기간 : 1년 이내
- 대출 한도
  - 출하촉진(결제자금): 중도매(법)인 전년도 실적 범위 내 최대 5억원까지 신청가능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업체당 50억원(도매시장법인), 업체당 10억원(중도매(법)인)
- 신청 방법

1 지원안내 신문 공고 (2~3월) → 2 자금신청 접수 →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4월) → 4 대출실행 (연중 ※ 담보대출) → 5 수시 배정 및 수시 대출 (연중)

16.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개요

목적	•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신(新)유통경로를 확산하여, 생산자는 농산물을 제값에 판매하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 도모
규모	2017 결산: 383 / 2018 결산: 378 / 2019 본예산: 383
기간	• 2016~현재
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혜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소비자 등
법령상 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주요 사업 경과	• 2013: 소비자참여형 직거래사업 시범사업 추진 • 201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201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017~2021)

사업 정보

- 지원 대상: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단, 전자상거래의 경우 “쌀”은 지원 가능)
  -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지역농산물을 해당 지역 내에서 납품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사업자
- 지원 내용/조건
  - 자체개설 판매장,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소비자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1차 농산물 구매 및 대출액의 125% 이상 소비자 직접 판매
- 대출 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 기간 : 1년 이내
- 대출 한도 : 업체당 20억원
- 신청 방법

1	2	3	4	5
지원안내 신문 공고	자금신청 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대출실행	수시 배정 및 수시 대출
1월	1월	3월	연중 ※ 담보대출	연중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17.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사업개요

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직거래 매취자금(운영), 판매장개설자금(시설) 등 융자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및 수급조절·가격안정에 기여
규모	2017 결산: 196 / 2018 결산: 240 / 2019 본예산: 225
기간	• 2003~현재
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수혜자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법령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주요 사업 경과	• 2003: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적정가격 및 안정적 판로보장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 2013: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 마련 • 2016: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사업으로 통합 • 2018: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판매장개설자금과 직거래 매취자금을 통합 운영

사업 정보

- 지원 대상: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내용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조합(지역조합·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전문유통업체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친환경농축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개인사업자	친환경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

- 지원 내용/조건
  - 총사업비의 80% 이내 융자

	사업의무	자금용도
운영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친환경농축산물 구매	친환경 농업인친환경 농업인, 생산자단체, 기가공식품업체로부터 국내산 친환경농축산물 구매
시설	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이 대출액의 125% 이상	친환경농축산물 전문매장 신규개설 및 확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시설(매장, 매대, 냉동·냉장설비 등, 소모성 비품은 제외) 설치비용

- 대출 금리
  - 운영: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시설: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연 2%,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대출 기간: (운영) 1년 이내, (시설) 5년(2년거치 3년균분상환)
- 대출 한도: (운영) 업체당 30억원, (시설) 매장당 360백만원
- 신청 방법
  - 시설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수요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운영자금 수요업체에 배정
  - 운영자금 배정은, 전년도 친환경농축산물 구매실적 비중에 따라 배정하고 잔액을 친환경농축산물 구매실적이 없는 업체에 배정

18.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인삼특용작물계열화

사업개요

목적	• 인삼 및 특용작물을 재배부터 수매·가공·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특용작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 농가 소득 보전
규모	2017 결산: 190 / 2018 결산: 186 / 2019 본예산: 194
기간	• 2004~현재
시행주체	• 농협경제지주
수혜자	• 인삼농협, 영농조합법인, 가공업체, 인삼특용재배농가, 소비자 등
법령상 근거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주요 사업 경과	• 1997: 인삼농가의 소득안정과 생산자단체의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해 출하장려 및 가공용 민간 수매지원 사업 추진 • 2004: 출하장려 사업과 생산자단체 및 민간 수매지원 사업을 계열화 사업으로 개선하여 지원 • 2010: 약용작물계열화 지원

사업 정보

- 지원 대상: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지원 내용/조건: 인삼 계약재배 자금, 인삼종자 수매자금, 특용작물 계약·매수자금 융자 지원
- 대출 금리/기간
  - 계약재배 자금: 무이자
  - 인삼종자 수매자금: 무이자
  - 특용작물 수매자금: 2.5~3%

	조건
인삼계열화	계약재배 금리 0%(5년 거치 일시상환), 인삼종자수매 금리 0%(1년 거치 일시상환)
특용계열화	계약재배 금리 0%(1~3년 거치 일시상환), 수매자금 금리 2.5~3%(1~3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 한도

		한도
계약재배	인삼	10a당 3,300천원
	특용작물	계약재배금액의 20~50% 범위내에서 지급
수매단가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 신청 방법

1. 사업대상자는 계약당사자(농가 등)에게 계약재배 신청 홍보
2.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재배농가는 사업대상자에게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3. 사업대상자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협경제지주 제출(~3.15)
4. 농협경제지주는 신청물량, 예년 실적, 재배 규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19.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개요

목적	•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 제고
규모	2017 결산: 82 / 2018 결산: 112 / 2019 본예산: 138
기간	• (가락시장) 2009~2021, (수원시장) 2017~2020, (안동시장) 2018~2020, (구리시장) 2019~2022
시행주체	• 지자체(도매시장 개설자)
수혜자	• 생산자, 소비자,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법령상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73조
주요 사업 경과	• 2004: 농업·농촌 종합대책 발표(가락시장 등 주요도매시장 시설개선 보완 강구) • 2007: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 (가락시장) 531,830㎡, (수원시장) 58,940㎡, (안동시장) 34,559㎡, (구리시장) 30,982㎡ 시설개선 추진

사업 정보

- 지원 대상: 지자체(공영도매시장 개설자)
- 지원 내용/조건
  -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경매장, 주차장 등 필수시설과 저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등 부수시설 및 기타시설의 현대화 비용, 설계비, 감리비 등 시설부대 경비
- 선정 조건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서울가락('09~'18), 대전오정('09~'13), 충남천안('12~'16), 경기수원('13~'20), 경북안동('18~'20)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해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 대출 한도: 융자 40%, 보조 30% 지원
- 신청 방법
  - 매년 3월 초 공모(변경가능)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당해년도 3월~4월)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

–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발표평가」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당해 년도 5월)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실효성, 시장 유통 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와의 사전 합의 및 지자체의 의지(지방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등을 종합평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개요

목적	•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지원을 통한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규모	2017 결산: 46 / 2018 결산: 83 / 2019 본예산: 84
기간	• 2013~현재
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혜자	•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로컬푸드직매장
법령상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의 2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 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주요 사업 경과	• 2010: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 방안 마련 • 2011: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공급망 구축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학교급식 우수 농수산물 공급확대 시범사업」실시 • 2013: 신규사업으로 지원 시작 • 20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우수한 식자재 학교급식 공급,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거래 지원 기준 마련)

사업 정보

- 지원 대상
  - 학교급식지원센터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학교급식지원센터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 영업허가증(또는 신고증) 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운반)업으로 인·허가 받은 자 등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 로컬푸드 직매장 :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 지원 내용/조건
  - 용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국내산 농·축산원료 구입자금 (가공식품 제외)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80% 이내 융자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학교급식 식재료 원물 구입
  - 배정기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우선 배정
    * 전년도 구매실적, 학교급식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배정
    * 배정규모 대비 신청총액 미달 시 업체별 대출지원한도 내에서 업체 신청액으로 배정
    * 배정완료 후 잔액발생 및 포기금액 발생 시 당초 선정업체 중 융자한도가 남아 있는 평가 후순위 업체에 우선 배정
- 대출 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 기간: 1년 이내
- 대출 한도: 업체당 20억원
- 신청 방법

1	2	3	4	5
지원안내 신문 공고	자금신청 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대출실행	수시 배정 및 수시 대출
1월	2월	3월	연중 ※ 담보대출	연중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참고문헌

국내문헌

기획재정부(2018),「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감사원(2016),「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각 부처별,「2019년도 사업설명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4),「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_____(2014),「국가재정제도 원리와 실제」.

김동건, 이기영, 황성현, 박정수(2002),「저금리시대의 재정융자제도 개편방향」, 한국재정연구회, 기획예산처 연구용역보고서.

김지영, 박상원(2008),「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융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박상원, 박정수, 안종범, 이원희(2008),「재정융자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성낙선, 유태현, 이상호, 한재명(2007),「재정융자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예산처 연구용역보고서.

임소영(2014),「재정융자제도의 개선과 이차보전 확대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2011),「한국경제 60년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2018),「국고보조금 이해하기 - 제도, 사업, 시스템」.

법제처(2018),「법령 입안·심사 기준」.

웹사이트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ecos.bok.kr/)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중소기업벤처부 기업마당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

부록

<부록 표 1> 기금별 융자 규모 추이 (2007~2018)

<부록 표 2> 기금별 융자 현황 및 주요 사업 (2019년도 기준)

<부록 표 3> 분야별 융자 규모 추이 (2007~2018)

<부록 표 4> 부처별 융자 규모 추이 (2007~2018)

<부록 표 5> 재정융자사업 목록 (2019년 규모 순)

부록 표 1 기금별 융자 규모 추이 (2007~2018)

(단위: 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택도시기금	100,418 (43.7)	95,028 (46.1)	120,621 (38)	110,906 (49.9)	134,090 (50.8)	158,515 (57.3)	140,940 (52.1)	159,137 (56.8)	156,178 (49.6)	156,401 (50.1)	186,385 (56.1)	199,821 (58.6)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31,750 (13.8)	31,336 (15.2)	58,772 (18.5)	33,355 (15)	33,524 (12.7)	36,230 (13.1)	43,844 (16.2)	40,355 (14.4)	38,890 (12.4)	45,100 (14.5)	46,350 (14)	44,150 (1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4,939 (4.7)	17,550 (5.6)	22,450 (6.8)	20,575 (6)
공무원연금기금	11,273 (4.9)	11,906 (5.8)	11,922 (3.8)	11,865 (5.3)	12,009 (4.6)	13,999 (5.1)	15,206 (5.6)	12,981 (4.6)	12,533 (4)	11,350 (3.6)	12,732 (3.8)	12,484 (3.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3,756 (6)	14,171 (6.9)	13,413 (4.2)	13,121 (5.9)	13,487 (5.1)	14,665 (5.3)	15,795 (5.8)	12,222 (4.4)	11,621 (3.7)	10,415 (3.3)	11,053 (3.3)	12,165 (3.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2,871 (5.6)	14,666 (7.1)	14,589 (4.6)	16,027 (7.2)	15,838 (6)	15,321 (5.5)	15,298 (5.6)	14,606 (5.2)	14,456 (4.6)	12,752 (4.1)	11,835 (3.6)	10,260 (3)
대외경제협력기금	1,553 (0.7)	2,371 (1.1)	3,128 (1)	4,107 (1.8)	5,097 (1.9)	5,779 (2.1)	6,148 (2.3)	6,308 (2.3)	7,343 (2.3)	7,454 (2.4)	7,487 (2.3)	8,579 (2.5)
농지관리기금	4,353 (1.9)	4,399 (2.1)	4,422 (1.4)	5,478 (2.5)	5,908 (2.2)	6,274 (2.3)	6,075 (2.2)	5,819 (2.1)	6,454 (2.1)	6,226 (2)	6,607 (2)	7,415 (2.2)
축산발전기금	3,629 (1.6)	4,615 (2.2)	3,233 (1)	2,601 (1.2)	2,203 (0.8)	2,675 (1)	5,233 (1.9)	6,341 (2.3)	5,565 (1.8)	5,998 (1.9)	5,667 (1.7)	5,185 (1.5)
관광진흥개발기금	2,373 (1)	2,092 (1)	2,134 (0.7)	2,074 (0.9)	2,131 (0.8)	2,785 (1)	3,120 (1.2)	4,851 (1.7)	6,132 (1.9)	6,200 (2)	6,100 (1.8)	4,920 (1.4)
수산발전기금	4,903 (2.1)	4,853 (2.4)	4,827 (1.5)	4,591 (2.1)	5,013 (1.9)	5,170 (1.9)	5,118 (1.9)	3,971 (1.4)	3,716 (1.2)	4,119 (1.3)	4,110 (1.2)	3,774 (1.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71 (0.2)	610 (0.3)	1,395 (0.4)	1,353 (0.6)	1,698 (0.6)	2,276 (0.8)	2,905 (1.1)	1,778 (0.6)	1,872 (0.6)	2,167 (0.7)	2,246 (0.7)	2,491 (0.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학진흥기금	895 (0.4)	1,244 (0.6)	1,536 (0.5)	2,234 (1)	2,171 (0.8)	1,741 (0.6)	2,214 (0.8)	2,661 (1)	2,491 (0.8)	2,381 (0.8)	1,792 (0.5)	2,084 (0.6)
전력산업기반기금	1,896 (0.8)	2,267 (1.1)	980 (0.3)	200 (0.1)	200 (0.1)	180 (0.1)	200 (0.1)	1,284 (0.5)	1,350 (0.4)	1,500 (0.5)	1,080 (0.3)	1,760 (0.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218 (0.5)	1,192 (0.6)	1,113 (0.4)	1,064 (0.5)	1,215 (0.5)	1,160 (0.4)	1,103 (0.4)	1,219 (0.4)	1,964 (0.6)	1,920 (0.6)	1,833 (0.6)	1,374 (0.4)
근로복지진흥기금	582 (0.3)	617 (0.3)	2,794 (0.9)	528 (0.2)	426 (0.2)	437 (0.2)	602 (0.2)	766 (0.3)	1,108 (0.4)	913 (0.3)	968 (0.3)	950 (0.3)
고용보험기금	1,195 (0.5)	1,274 (0.6)	1,701 (0.5)	1,387 (0.6)	1,127 (0.4)	1,019 (0.4)	1,172 (0.4)	409 (0.1)	647 (0.2)	583 (0.2)	1,138 (0.3)	916 (0.3)
국민체육진흥기금	176 (0.1)	165 (0.1)	115 (0)	113 (0.1)	75 (0)	82 (0)	56 (0)	65 (0)	137 (0)	315 (0.1)	383 (0.1)	416 (0.1)
군인복지기금	1,253 (0.5)	1,231 (0.6)	1,382 (0.4)	1,576 (0.7)	1,574 (0.6)	1,601 (0.6)	1,690 (0.6)	1,786 (0.6)	1,261 (0.4)	1,380 (0.4)	747 (0.2)	369 (0.1)
정보통신진흥기금	1,620 (0.7)	1,430 (0.7)	700 (0.2)	800 (0.4)	300 (0.1)	302 (0.1)	400 (0.1)	570 (0.2)	600 (0.2)	730 (0.2)	400 (0.1)	350 (0.1)
국민연금기금		0 (0)				399 (0.1)	277 (0.1)	276 (0.1)	341 (0.1)	342 (0.1)	342 (0.1)	323 (0.1)
보훈기금	1,294 (0.6)	228 (0.1)	296 (0.1)	277 (0.1)	288 (0.1)	281 (0.1)	310 (0.1)	321 (0.1)	324 (0.1)	290 (0.1)	290 (0.1)	291 (0.1)
임금채권보장기금	0 (0)					1 (0)	10 (0)	24 (0)	37 (0)	73 (0)	84 (0)	128 (0)
공공자금관리기금	28,563 (12.4)	9,546 (4.6)	67,830 (21.4)	7,570 (3.4)	24,722 (9.4)	5,270 (1.9)	1,810 (0.7)	1,960 (0.7)	20,694 (6.6)	14,945 (4.8)	109 (0)	52 (0)
남북협력기금	2,805 (1.2)	366 (0.2)	240 (0.1)	453 (0.2)	130 (0)	221 (0.1)	746 (0.3)	223 (0.1)	36 (0)	760 (0.2)	27 (0)	26 (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24 (0)	20 (0)	17 (0)	14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26 (0.1)	177 (0.1)	131 (0)	51 (0)	5 (0)	18 (0)	12 (0)	3 (0)				
과학기술진흥기금	300 (0.1)	150 (0.1)										
방송통신발전기금	140 (0.1)	145 (0.1)	188 (0.1)	234 (0.1)	410 (0.2)	276 (0.1)	406 (0.1)					
지역신문발전기금	4 (0)	33 (0)	28 (0)	12 (0)	10 (0)							
응급의료기금	70 (0)	19 (0)	62 (0)	100 (0)	100 (0)	100 (0)	30 (0)	(0)	4,000 (1.3)			
청소년육성기금	35 (0)	5 (0)	8 (0)									
양성평등기금	1 (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60 (0)	60 (0)	29 (0)	28 (0)	25 (0)	24 (0)	23 (0)	15 (0)				
언론진흥기금	47 (0)	27 (0)	20 (0)	29 (0)	24 (0)	30 (0)	24 (0)	13 (0)	1 (0)			
영화발전기금	22 (0)	4 (0)	25 (0)									
총합계	229,751 (100)	206,226 (100)	317,634 (100)	222,132 (100)	263,799 (100)	276,832 (100)	270,768 (100)	279,966 (100)	314,714 (100)	311,883 (100)	332,232 (100)	340,873 (100)

주: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부록 표 2 기금별 융자 현황 및 주요 사업(2019년도 기준)

(단위: 억원, %, 개)

	융자금(비중)	사업수	주요 융자 사업
주택도시기금	185,682 (56.3)	17	주택구입 · 전세자금,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공공임대 등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36,700 (11.1)	6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9,500 (5.9)	1	소상공인지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3,049 (4.0)	10	산지유통종합자금,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등
대외경제협력기금	11,412 (3.5)	6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
공무원연금기금	10,413 (3.2)	2	공무원연금대부, 대여학자금융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9,791 (3.0)	3	생활안정자금대여,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직원복지대부
농지관리기금	8,968 (2.7)	4	맞춤형농지지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4,920 (1.5)	1	관광산업 관련 융자 지원
축산발전기금	4,580 (1.4)	7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료산업종합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수산발전기금	3,784 (1.1)	9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우수수산물지원 등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2,664 (0.8)	6	축사시설현대화, 과수 생산유통지원, 원예시설현대화 지원 등

	융자금(비중)	사업수	주요 융자 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2,570 (0.8)	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학진흥기금	2,198 (0.7)	3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
남북협력기금	1,585 (0.5)	3	경협기반, 경제교류협력대출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202 (0.4)	2	산재예방시설융자 등
공공자금관리기금	1,071 (0.3)	3	지방채 인수 등
근로복지진흥기금	847 (0.3)	1	생활안정자금
고용보험기금	599 (0.2)	2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고용장려금 등
군인복지기금	433 (0.1)	2	학자금대부 등
국민연금기금	389 (0.1)	1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310 (0.1)	1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보훈기금	291 (0.1)	4	국가유공자대부 등
정보통신진흥기금	270 (0.1)	1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00 (0.0)	1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임금채권보장기금	84 (0.0)	1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문화예술진흥기금	80 (0.0)	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3 (0.0)	1	시설대체자금융자
기금 전체	**323,506 (98.1)**	**100**	

주: 비중은 전체 융자금에서 개별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부록 표 3 분야별 융자 규모 추이 (2007~2018)

(단위: 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회복지	129,365 (52.8)	125,305 (56.4)	153,437 (46.3)	142,445 (60.7)	165,319 (59.6)	191,541 (66.2)	175,240 (62.8)	189,965 (66.2)	187,784 (58)	184,719 (57.7)	215,703 (63.6)	226,600 (65.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5,550 (18.6)	45,983 (20.7)	70,759 (21.4)	43,315 (18.4)	44,666 (16.1)	45,325 (15.7)	50,172 (18)	47,130 (16.4)	62,619 (19.3)	70,049 (21.9)	74,177 (21.9)	70,592 (20.3)
농림수산	32,611 (13.3)	33,026 (14.9)	29,494 (8.9)	29,172 (12.4)	29,522 (10.6)	33,168 (11.5)	35,951 (12.9)	30,757 (10.7)	29,860 (9.2)	30,028 (9.4)	30,771 (9.1)	32,104 (9.2)
통일·외교	4,358 (1.8)	2,738 (1.2)	3,368 (1.0)	4,560 (1.9)	5,227 (1.9)	6,000 (2.1)	6,895 (2.5)	6,531 (2.3)	7,378 (2.3)	8,215 (2.6)	7,513 (2.2)	8,605 (2.5)
문화및관광	2,761 (1.1)	2,465 (1.1)	2,508 (0.8)	2,462 (1.0)	2,450 (0.9)	3,053 (1.1)	3,463 (1.2)	4,929 (1.7)	6,270 (1.9)	6,515 (2.0)	6,483 (1.9)	5,336 (1.5)
교육	999 (0.4)	1,645 (0.7)	23,018 (6.9)	2,284 (1.0)	2,216 (0.8)	1,741 (0.6)	2,214 (0.8)	2,948 (1.0)	20,883 (6.4)	16,524 (5.2)	1,792 (0.5)	2,084 (0.6)
환경	1,821 (0.7)	1,919 (0.9)	1,650 (0.5)	1,396 (0.6)	1,339 (0.5)	1,339 (0.5)	1,489 (0.5)	901 (0.3)	1,151 (0.4)	1,114 (0.3)	1,408 (0.4)	1,351 (0.4)
국방	1,253 (0.5)	1,231 (0.6)	1,382 (0.4)	1,576 (0.7)	1,574 (0.6)	1,601 (0.6)	1,690 (0.6)	1,786 (0.6)	1,261 (0.4)	1,380 (0.4)	747 (0.2)	369 (0.1)
통신	2,875 (1.2)	2,200 (1.0)	1,000 (0.3)	800 (0.3)	500 (0.2)	422 (0.1)	542 (0.2)	570 (0.2)	600 (0.2)	730 (0.2)	400 (0.1)	350 (0.1)
일반·지방행정	22,127 (9)	4,743 (2.1)	43,237 (13.1)	5,729 (2.4)	23,711 (8.5)	4,774 (1.7)	1,500 (0.5)	1,450 (0.5)	2,107 (0.7)	708 (0.2)	14 (0.0)	0 (0.0)
과학기술	300 (0.1)	150 (0.1)										
국토및지역개발	131 (0.1)	0 (0.0)										
교통및물류	521 (0.2)	707 (0.3)	1,230 (0.4)	941 (0.4)	645 (0.2)	105						
보건	275 (0.1)	44 (0.0)	127 (0.0)	165 (0.1)	159 (0.1)	110 (0.0)	30 (0.0)		4,000 (1.2)			
전체	244,948 (100)	222,156 (100)	331,210 (100)	234,844 (100)	277,326 (100)	289,180 (100)	279,187 (100)	286,967 (100)	323,913 (100)	319,980 (100)	339,009 (100)	347,390 (100)

주: 1) 결산 기준. 단, 2018년도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준
2) ( )은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부록 표 4 부처별 융자 규모 추이 (2007~2018)

(단위: 억원, %)

부처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토교통부	100,418 (41.0)	95,028 (42.8)	120,621 (36.4)	110,906 (47.2)	134,090 (48.4)	158,515 (54.8)	140,940 (50.5)	159,137 (55.5)	156,178 (48.2)	156,401 (48.9)	186,385 (55)	199,821 (57.5)
중소벤처기업부	31,750 (13)	31,336 (14.1)	58,772 (17.7)	33,355 (14.2)	33,524 (12.1)	36,230 (12.5)	43,844 (15.7)	40,355 (14.1)	53,829 (16.6)	62,650 (19.6)	68,800 (20.3)	64,725 (18.6)
농림축산식품부	24,519 (10)	825 (0.4)					30,543 (10.9)	26,561 (9.3)	25,903 (8)	25,220 (7.9)	25,833 (7.6)	27,437 (7.9)
농림수산식품부		30,476 (13.7)	28,431 (8.6)	28,325 (12.1)	29,213 (10.5)	32,909 (11.4)	64 (0.0)					
해양수산부	5,103 (2.1)						5,145 (1.8)	3,972 (1.4)	3,723 (1.1)	4,119 (1.3)	4,110 (1.2)	3,774 (1.1)
인사혁신처								12,981 (4.5)	12,533 (3.9)	11,350 (3.5)	12,732 (3.8)	12,484 (3.6)
교육부	13,766 (5.6)						17,512 (6.3)	17,267 (6)	16,947 (5.2)	15,133 (4.7)	13,627 (4)	12,344 (3.6)
교육과학기술부		16,060 (7.2)	16,125 (4.9)	18,261 (7.8)	18,009 (6.5)	17,063 (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20 (0.8)	(0.0)	(0.0)	(0.0)	(0.0)	(0.0)	806 (0.3)	570 (0.2)	600 (0.2)	730 (0.2)	400 (0.1)	350 (0.1)
기획재정부	30,117 (12.3)	11,918 (5.4)	70,958 (21.4)	11,677 (5)	29,819 (10.8)	11,050 (3.8)	7,958 (2.9)	8,268 (2.9)	28,037 (8.7)	22,400 (7)	7,596 (2.2)	8,631 (2.5)
산업통상자원부	13,325 (5.4)	15,617 (7)	12,687 (3.8)	10,760 (4.6)	11,441 (4.1)	9,397 (3.2)	6,328 (2.3)	6,774 (2.4)	8,791 (2.7)	7,399 (2.3)	5,378 (1.6)	5,867 (1.7)
문화체육관광부	2,621 (1.1)	2,320 (1.0)	2,320 (0.7)	2,228 (0.9)	2,240 (0.8)	2,897 (1.0)	3,200 (1.1)	4,929 (1.7)	6,270 (1.9)	6,515 (2)	6,483 (1.9)	5,336 (1.5)
고용노동부	3,222 (1.3)	3,260 (1.5)	5,740 (1.7)	3,030 (1.3)	2,773 (1)	2,635 (0.9)	2,899 (1)	2,421 (0.8)	3,756 (1.2)	3,489 (1.1)	4,023 (1.2)	3,368 (1.0)
환경부	1,014 (0.4)	1,106 (0.5)	1,050 (0.3)	1,396 (0.6)	1,339 (0.5)	1,339 (0.5)	1,489 (0.5)	901 (0.3)	1,151 (0.4)	1,114 (0.3)	1,408 (0.4)	1,351 (0.4)
산림청	267 (0.1)	275 (0.1)	344 (0.1)	338 (0.1)	309 (0.1)	259 (0.1)	200 (0.1)	224 (0.1)	234 (0.1)	688 (0.2)	828 (0.2)	893 (0.3)
국방부	1,253 (0.5)	1,231 (0.6)	1,382 (0.4)	1,576 (0.7)	1,574 (0.6)	1,601 (0.6)	1,690 (0.6)	1,786 (0.6)	1,261 (0.4)	1,380 (0.4)	747 (0.2)	369 (0.1)
보건복지부	95 (0.0)	49 (0.0)	135 (0.0)	165 (0.1)	159 (0.1)	509 (0.2)	307 (0.1)	276 (0.1)	4,341 (1.3)	342 (0.1)	342 (0.1)	323 (0.1)
국가보훈처	1,294 (0.5)	228 (0.1)	296 (0.1)	277 (0.1)	288 (0.1)	281 (0.1)	310 (0.1)	321 (0.1)	324 (0.1)	290 (0.1)	290 (0.1)	291 (0.1)
통일부	2,805 (1.1)	366 (0.2)	240 (0.1)	453 (0.2)	130 (0)	221 (0.1)	746 (0.3)	223 (0.1)	36 (0.0)	760 (0.2)	27 (0)	26 (0)
행정안전부	11,273 (4.6)	11,906 (5.4)	11,922 (3.6)	11,865 (5.1)	12,009 (4.3)	13,999 (4.8)	15,206 (5.4)	0 (0.0)	0 (0.0)			
방송통신위원회	140 (0.1)	145 (0.1)	188 (0.1)	234 (0.1)	410 (0.1)	276 (0.1)	0 (0.0)					
농촌진흥청	10 (0.0)	10 (0.0)										
국가청소년위원회	35 (0.0)											
여성가족부	1 (0.0)											
합계	244,948 (100)	222,156 (100)	331,210 (100)	234,844 (100)	277,326 (100)	289,180 (100)	279,187 (100)	286,967 (100)	323,913 (100)	319,980 (100)	339,009 (100)	347,390 (100)

주: 1) 2007~2018년 결산 기준, 2019년 본예산 기준
2)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처명이 다른 해의 경우 최근 기준으로 수정하여 시계열을 유지하였음
3)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08~2012년 기간에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부록 표 5 재정융자사업 목록(2019년 규모 순)

1. 사회복지 분야

세부사업명	회계명	소관	2016	2017	2018	2019
주택구입 ·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113,216	127,056	88,095	78,442
전세임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44,575	29,073
다가구매입임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5,035	7,100	9,759	15,930
공공임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17,774	21,002	15,193	15,442
민간임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4,165	10,597	19,480	14,525
행복주택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6,615	10,673	9,230	13,269
생활안정자금대여(사립학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부	11,821	11,000	9,493	9,043
국민임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4,157	4,449	5,331	7,952
공무원연금대부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6,300	8,000	7,954	6,000
대여학자금융자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5,050	4,732	4,530	4,413
분양주택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5,211	4,866	2,973	3,005
집주인임대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3,258	2,500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80	675	1,500
도시재생지원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24	270	672	1,330
산재예방시설융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노동부	1,745	1,661	1,228	1,067
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21	1,000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노동부			950	847

세부사업명	회계명	소관	2016	2017	2018	2019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부	931	835	767	748
수요자중심형재생사업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526	610
노후산단재생지원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504
주택성능보강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500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342	342	323	389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273	410	411	317
고용장려금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418	282
국가유공자대부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260	262	264	26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노동부	174	172	147	136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26	100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고용노동부				100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부	73	84	128	84
장애인자립자금융자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부	58	38	16	38
민간보육시설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부	37	57	36	33
제대군인대부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26	25	21	23
5·민주유공자대부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2		3	2
특수임무유공자대부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1	1	2	1
준주택지원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183	58	5	1
직원복지대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부	0	0	0	0

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세부사업명	회계명	소관	2016	2017	2018	2019
창업기업자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20,500	20,460	20,800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17,550	22,450	20,575	19,500
신성장기반자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13,950	12,300	10,800	8,800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산업통상자원부	5,000	3,500	3,200	2,800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1,000	880	1,760	2,570
재도약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2,550	2,550	2,790	2,300
투융자복합금융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1,500	1,700	2,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5,750	5,900	1,800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6,100	3,750	2,500	1,000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산업통상자원부		337	500	367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산업통상자원부	650	356	311	296
가스안전관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산업통상자원부	209	88	80	79
시설대체자금융자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통상자원부	20	17	14	13

3. 농림수산

세부사업명	회계명	소관	2016	2017	2018	2019
산지유통종합자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5,198	5,457	5,752	5,628
맞춤형농지지원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3,467	4,649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3,275	3,386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4,500	4,200	3,800	3,36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2,584	2,838	2,820	2,900
축사시설현대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992	1,183	1,501	1,642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1,001	933	1,312	1,300
농지연금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522	673	1,003	1,299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1,377	1,238	1,300	1,259
우수수산물지원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1,302	1,296	1,322	1,181
도매유통활성화지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755	892	826	969
수산물수매지원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796	869	865	782
비축지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743
과수 생산유통지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580	553	603	551
사료산업종합지원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613	607	568	533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산림청	638	588	540	500
가축분뇨처리지원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628	519	557	483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377	383	378	383

세부사업명	회계명	소관	2016	2017	2018	2019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300
재해대책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180	28	37	285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219	196	240	225
귀산촌인창업자금지원(융자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산림청	50	240	273	200
인삼특용작물계열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186	194
원예시설현대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395	309	187	151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35	82	112	138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120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30	126	12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184	186	145	108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81	88	38	100
원유소비활성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100	100	100	100
원유생산비절감 우수조합 지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100	100	100	100
임업인경영자금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산림청			80	95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153	143	106	93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66	46	83	84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78	83	83	83
가축개량지원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47	90	90	60
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40

세부사업명	회계명	소관	2016	2017	2018	2019
수산장비구입지원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17	22	25	30
양식어업지원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18	28	28	22
말산업육성지원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23	24	14	20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41	12	15
해외수산시설투자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9	8	0	7

4. 통일·외교

세부사업명	회계명	소관	2016	2017	2018	2019
아시아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2,775	2,316	2,189	3,545
아프리카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2,635	1,692	2,519	2,834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1,382	2,293	2,325
태평양(대양주포함) 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763	643	713	1,297
경협기반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0	0	0	1,197
중동-CIS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741	490	765
중남미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724	712	375	646
경제교류협력대출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0	0	238
개성공단 운영대출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760		26	151

5. 문화및관광

세부사업명	회계명	소관	2016	2017	2018	2019
관광산업 융자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6,200	6,100	4,920	4,920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315	383	416	310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80

6. 교육

세부사업명	회계명	소관	2016	2017	2018	2019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1,077	677	1,116	1,180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5금융자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953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65

7. 환경

세부사업명	회계명	소관	2016	2017	2018	2019
재활용산업육성융자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	1,036	1,329	1,284	1,284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120
천연가스자동차보급 기타 민간융자금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	49	49	4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환경부				49

8. 일반·지방행정

세부사업명	회계명	소관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 인수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부	708	14	0	1,000

9. 국방

학자금대부	회계명	소관	2016	2017	2018	2019
학자금대부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308	296	278	269
군간부전세자금대부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1,072	451	90	164

10. 통신

세부사업명	회계명	소관	2016	2017	2018	2019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30	14	350	270

재정융자사업 이해하기

발 간 일 2019년 10월

발 행 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편　　집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통계분석부

발 행 처 한국재정정보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02-6273-0500

디자인·인쇄 (주)에스아이케이알 Tel. 02-549-5298

ISBN 979-11-965521-7-6

문　　의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통계분석부 02-6908-8557
sokim@kpfis.kr

© 한국재정정보원, 2019

재정융자사업 이해하기

Understing Fiscal Loan

비매품/무료

13320

9 791196 552176

ISBN 979-11-965521-7-6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 02-6908-8200 F 02-6312-8959 H www.kpfis.or.kr